

2010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

- 전라남도 진도군 -

김승권 · 김연우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장 일반현황	3
제1절 인구특성	3
제2절 복지조직 및 예산	6
제3절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현황	8
 제2장 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11
제1절 최근 5년간 복지정책평가의 전국 순위	11
제2절 2010년 복지정책평가의 전체 및 영역별 점수	11
제3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13
제4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4
 제3장 진도군민의 복지욕구	41
제1절 진도군민의 복지수요	41
제2절 진도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75
 제4장 진도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	85
제1절 기본방향	85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92
 참고문헌	103
 부록	107
1.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107
2. 농어촌 지역 평가그룹(2010년)	120

표 목차

〈표 1-1〉 인구현황	3
〈표 1-2〉 진도군의 인구증감추이	4
〈표 1-3〉 가구현황	4
〈표 1-4〉 연령별 인구	5
〈표 1-5〉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5
〈표 1-6〉 대상별 인구	6
〈표 1-7〉 일반회계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예산	7
〈표 1-8〉 복지시설현황	8
〈표 2-1〉 5년간 전국 순위	11
〈표 2-2〉 전국, 해당그룹, 진도군 영역별 점수	12
〈표 2-3〉 2개년간 진도군 영역별 점수	12
〈표 2-4〉 각 영역의 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14
〈표 2-5〉 복지총괄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15
〈표 2-6〉 노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19
〈표 2-7〉 아동·청소년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21
〈표 2-8〉 보육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23
〈표 2-9〉 장애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25
〈표 2-10〉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29
〈표 2-11〉 기초생활보장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31
〈표 2-12〉 자활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33
〈표 2-13〉 의료급여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36
〈표 3-1〉 성별·저소득층	41
〈표 3-2〉 거주지역에 대한 의견	42
〈표 3-3〉 주거문제에 대한 의견	42
〈표 3-4〉 소득불평등 문제	42

〈표 3-5〉 고용문제	43
〈표 3-6〉 복지시설 부족 문제	43
〈표 3-7〉 어려운 문제(1)	43
〈표 3-8〉 어려운 문제(2)	44
〈표 3-9〉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도움	44
〈표 3-10〉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여부	45
〈표 3-1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45
〈표 3-12〉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46
〈표 3-13〉 진도군에서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분야	46
〈표 3-14〉 진도군민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47
〈표 3-15〉 진도군 복지재정에 대한 생각(저소득층)	47
〈표 3-16〉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47
〈표 3-17〉 가구 전체 월평균 부채	48
〈표 3-18〉 자녀가 있는지 여부	48
〈표 3-19〉 혼인상태	48
〈표 3-20〉 경제활동 여부 및 의향	49
〈표 3-21〉 소득 및 재산상태	49
〈표 3-22〉 어르신의 수입원	50
〈표 3-23〉 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	50
〈표 3-24〉 노인(종합)복지(회)관	51
〈표 3-25〉 경로당(노인정)	51
〈표 3-26〉 기초노령연금	51
〈표 3-27〉 노인일자리사업	52
〈표 3-28〉 노인공동작업장	52
〈표 3-29〉 노인취업알선센터	53
〈표 3-30〉 노인 인력지원기관(지역시니어클럽)	53
〈표 3-31〉 노인전문병원	54

〈표 3-32〉 양로시설	54
〈표 3-33〉 주간보호시설	54
〈표 3-34〉 경로식당/무료급식	55
〈표 3-35〉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55
〈표 3-36〉 가사지원 서비스(가정봉사원 등)	56
〈표 3-37〉 보장구 대여서비스(휠체어, 대·소변기)	56
〈표 3-3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	57
〈표 3-39〉 어려운 문제	58
〈표 3-40〉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58
〈표 3-41〉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59
〈표 3-42〉 재활 병·의원	59
〈표 3-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0
〈표 3-44〉 교육재활	60
〈표 3-45〉 사회재활훈련	61
〈표 3-46〉 심리재활	61
〈표 3-47〉 여가활동 프로그램	62
〈표 3-48〉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62
〈표 3-49〉 재가서비스	63
〈표 3-50〉 소득보장(장애수당급여 등)	63
〈표 3-51〉 소득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64
〈표 3-52〉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64
〈표 3-53〉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64
〈표 3-54〉 취업을 원하는지 여부	65
〈표 3-55〉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운 점	65
〈표 3-56〉 여가활동	66
〈표 3-57〉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66
〈표 3-58〉 사회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67

〈표 3-59〉 어려운 일 경험	67
〈표 3-60〉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68
〈표 3-61〉 여성센터	68
〈표 3-62〉 여성인력개발센터	69
〈표 3-63〉 여성회관	69
〈표 3-64〉 가정폭력상담소	69
〈표 3-65〉 성폭력상담소	70
〈표 3-66〉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70
〈표 3-67〉 낮 시간동안 취학 전 자녀 돌봄	71
〈표 3-68〉 평균 보육비용	71
〈표 3-69〉 월평균 사교육비	72
〈표 3-70〉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72
〈표 3-71〉 아동청소년회관	73
〈표 3-72〉 아동학대예방센터	73
〈표 3-73〉 아동상담실	73
〈표 3-74〉 지역아동센터	74
〈표 3-7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75
〈표 3-76〉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76
〈표 3-77〉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77
〈표 3-78〉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77
〈표 3-79〉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78
〈표 3-8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78
〈표 3-81〉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79
〈표 3-82〉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	80
〈표 3-83〉 결혼이민자 특성별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돌보는 사람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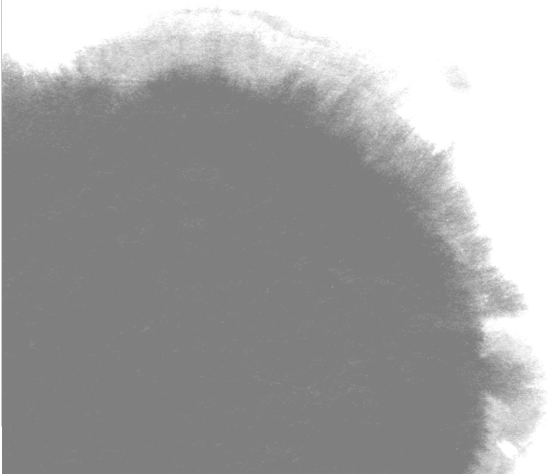
〈표 3-84〉 결혼이민자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81
〈표 3-8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	82

그림 목차

[그림 1-1] 진도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	7
-------------------------------	---

01

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 진도군의 2009년 말 인구는 34,181명(외국인 포함)으로 남성 16,434명, 여성 17,747명임.

○ 외국인 비율은 진도군 전체 인구의 0.73%(250명)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비율 0.54%보다 다소 높고, 전라남도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비율 0.27%보다 현저히 높음.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¹⁾			국적 ²⁾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	48,746,693	24,481,480	24,265,213	44,279,490	44,041,973	237,517
전라남도	1,761,820	872,913	888,907	1,709,081	1,704,436	4,645
진도군 ³⁾	34,181	16,434	17,747	34,181	33,931	250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9;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3) 진도군, 통계연보, 2010.

□ 2000~2009년 기간중 진도군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소속도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

○ 동 기간중 진도군의 인구는 약 19.2%(8,116명)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멈출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표 1-2〉 진도군의 인구증감추이

(단위: 명, %)

구분	총 인구수	전년도 대비 인구증감수	전년도 대비 인구증감률
2000	42,297	-	-
2001	41,229	-1,068	-2.5
2002	39,727	-1,502	-3.6
2003	38,454	-1,273	-3.2
2004	37,408	-1,046	-2.7
2005	36,627	-781	-2.1
2006	36,100	-527	-1.4
2007	35,397	-703	-1.9
2008	34,654	-743	-2.1
2009	34,181	-473	-1.4

자료: 진도군, 통계연보, 2010.

□ 진도군의 총 가구수는 15,580가구로 평균 가구원수는 2.19명이었음.

- 진도군의 평균 가구원수는 전국 평균 가구원수(2.88명)와 전라남도 평균 가구원수(2.67명)보다 현저히 적어 농촌지역의 특성인 노인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음을 엿볼 수 있음.

〈표 1-3〉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총 인구수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국 ¹⁾	48,746,693	16,916,966	2.88
전라남도 ¹⁾	1,761,820	659,294	2.67
진도군 ²⁾	34,181	15,580	2.19

주: 1)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2) 진도군은 내국인 기준임.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9; 2) 진도군, 통계연보, 2010.

2. 인구구조

□ 진도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및 전라남도의 평균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년인구(0~14세)는 적었고, 노인인구(65세 이상)는 현저히 많았음.

- 진도군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59.8%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72.6%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전라남도의 64.1%보다도 낮았음.
- 마찬가지로 유년인구는 12.4%로 우리나라의 16.8%, 전라남도의 16.2%보다도 낮았음.

- 이와는 상반되게 노년인구 비율은 27.8%로 우리나라의 10.6%보다 2.6배 이상 높았고, 전라남도의 19.7%보다도 높았음.

〈표 1-4〉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 ¹⁾	48,746,693 (100.0%)	8,180,366 (16.8%)	35,373,617 (72.6%)	5,192,710 (10.6%)
전라남도 ¹⁾	1,761,820 (100.0%)	286,365 (16.2%)	1,128,989 (64.1%)	346,466 (19.7%)
진도군 ²⁾	33,931 (100.0%)	4,191 (12.4%)	20,298 (59.8%)	9,442 (27.8%)

주: 진도군은 내국인 기준임.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9; 2) 진도군, 통계연보, 2010.

-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진도군의 총부양비는 전국 37.81%보다 높은 67.16%로 전라남도 56.05%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노년화지수는 225.29로 전국 (63.48)의 약 3.5배, 전라남도(120.99)의 약 1.9배 높음.

- 유년부양비는 20.65%로 전국(23.13%) 및 전라남도(25.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렇지만 노년부양비는 46.52%로 전국(14.68%) 및 전라남도(30.69%)와 큰 차이를 보임.

〈표 1-5〉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명)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 ¹⁾	23.13	14.68	37.81	63.48
전라남도 ¹⁾	25.36	30.69	56.05	120.99
진도군 ²⁾	20.65	46.52	67.16	225.29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진도군은 내국인 기준임.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9; 2) 진도군, 통계연보, 2010.

□ 진도군의 전체 인구대비 복지대상인구의 비율은 전국 및 전라남도보다 높았음.

-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9.39%로 전국 3.04%, 전라남도 5.96%보다 현저히 높았음.
-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9.56%로 전국 4.98%, 전라남도 8.18%보다 다소 높았음.
- 전체 가구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1.11%로 전국 0.78%, 전라남도 0.99%보다 높았음.

〈표 1-6〉 대상별 인구

(단위: 명, 가구)

구분	전체인구	전체가구	기초생활수급자 ¹⁾ (전체인구대비 비율)	등록장애인 수 ²⁾ (전체인구대비 비율)	다문화가족 수 ³⁾ (전체가구대비 비율)
전국	48,746,693	16,916,966	1,482,719 (3.04%)	2,429,547 (4.98%)	131,702 (0.78%)
전라남도	1,761,820	659,294	105,007 (5.96%)	144,039 (8.18%)	6,503 (0.99%)
진도군	34,181	15,580	3,209 (9.39%)	3,266 (9.56%)	173 (1.11%)

자료: 1) 보건복지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0; 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0; 3)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제2절 복지조직 및 예산

1. 복지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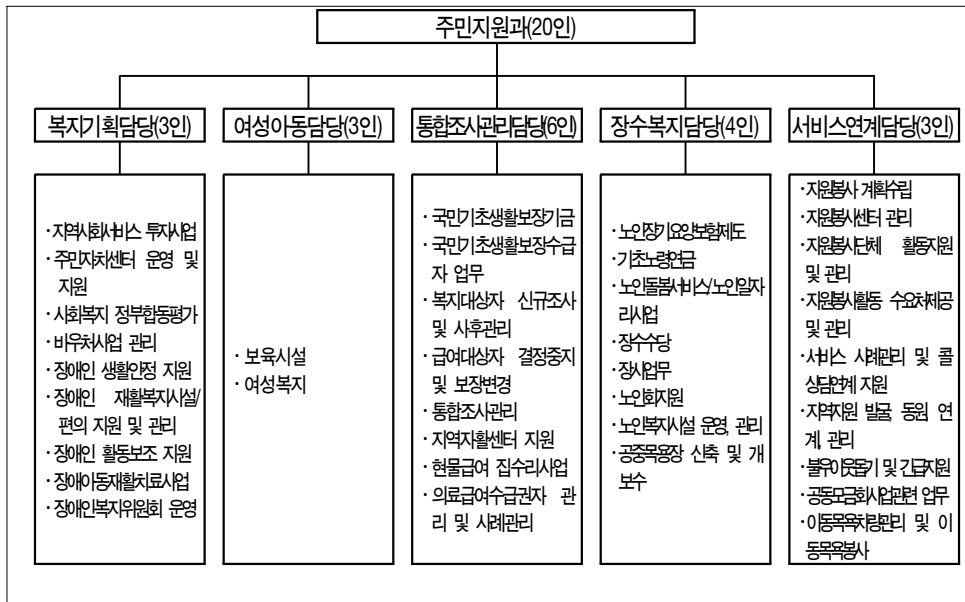
□ 진도군의 공공복지체계는 주민지원과 내 5개 담당(복지기획, 여성아동, 통합조서관리, 장수복지, 서비스연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 또는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수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함.
- 다만, 다음의 문제점을 적극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업무를 ‘복지기획담당’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복지기획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가 적절

히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가족업무, 아동복지업무, 청소년업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조직 체계에서 엿볼 수 있음.

[그림 1-1] 진도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



자료: 진도군, 내부자료, 2011.

2. 예산

□ 진도군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2,647억 4,504만 2천원이며,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3.28%(351억 5,041만 7천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진도군의 전체인구(34,181명)를 감안한다면, 인구 1인당 1,028,361원의 공공 복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임.

〈표 1-7〉 일반회계 전체예산 및 사회복지예산

(단위: 천원, %)		
전체예산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율
264,745,042	35,150,417	13.28

자료: 진도군, 내부자료, 2011.

제3절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현황

□ 2011년 현재 진도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34개소로 생활시설 4개소, 이용시설 30개소임.

-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직원은 22명이고, 입소정원은 36명임.
- 이용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영유아 포함),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직원 85명,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 직원 30명,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직원 16명, 어린이집 11개소에 직원 88명,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직원 5명

〈표 1-8〉 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직원수
생활시설	4	36	22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4	36	22
이용시설	30	-	224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5	-	65
노인복지관	2	-	2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1	-	22
수화통역센터	1	-	4
심부름센터	1	-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8	-	16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	11	-	88
저소득층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1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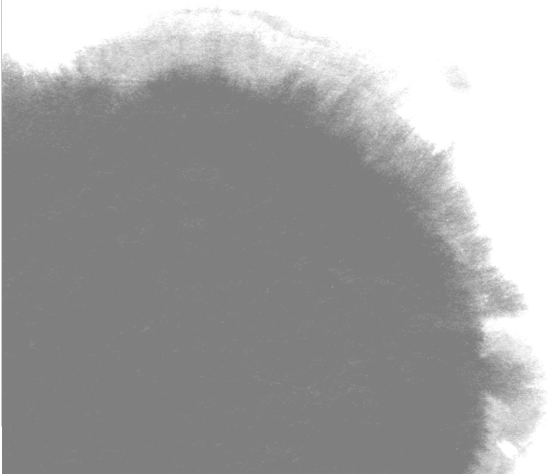
주: 1)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없음.

2)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없음.

자료: 진도군, 내부자료, 2011.

02

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2장 2010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최근 5년간 복지정책평가의 전국 순위

-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위에 의하여 진도군의 지난 5년간 복지정책의 종합평가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직접평가를 받은 2006~2008년 기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 시도 합동평가 ’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평가를 받은 2009~2010년 기 군에도 좋지 않았음.
- 3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이 평가결과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김승권 외, 2007, 2008, 2009, 2010),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표 2-1〉 5년간 전국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간 평균순위
153	228	215	179	228	201

제2절 2010년 복지정책평가의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진도군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7,715점 만점에 4,539.52점으로 100점 환산시 58.84점임.
-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복지만이 유일하게 80점대이었음.

- 40점대는 자활영역이었고, 50점대는 복지총괄,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이었음.
- 높은 노인 및 장애인 비율, 많은 복지시설, 전담부서 설치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 영역은 각각 69.28점, 55.00점으로 투입대비 효과가 낮았음.

〈표 2-2〉 전국, 해당그룹, 진도군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만점)	전국			해당그룹			진도군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7715점 기준	100점 기준
복지총괄(1711점)	1,541.11	1,136.75	778.99	1,400.24	1,171.74	926.54	975.08	56.99
노인복지(922점)	922.00	769.88	607.30	922.00	775.90	638.80	638.80	69.28
아동·청소년(568점)	516.88	372.28	227.20	516.88	371.63	255.60	460.08	81.00
보육(568점)	545.28	383.40	227.20	448.72	348.51	272.64	363.52	64.00
장애인(937점)	883.45	605.68	374.80	808.48	609.47	501.08	515.35	55.00
지역사회서비스(826점)	722.80	550.77	382.00	544.46	456.42	420.56	433.60	52.49
기초생활보장(885점)	734.55	494.68	371.70	672.60	483.59	371.70	469.05	53.00
자활(688점)	646.72	428.28	275.20	605.44	430.00	275.20	330.24	48.00
의료급여(610점)	573.40	436.73	280.60	500.20	423.51	353.80	353.80	58.00
계(7715점 만점)	6,063.71	5,178.45	4,185.40	5,586.10	5,070.78	4,539.52	4,539.52	58.84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7,715점임.

- 최근 2년간의 영역별 평가점수를 비교해 보면, 9개 영역 중 3개 영역은 평가점수가 상승하였고, 6개 영역은 저하하였음.
- 의료급여 영역은 가장 크게 저하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등도 크게 낮아졌음.

〈표 2-3〉 2개년간 진도군 영역별 점수

분야	점수		백분율		
	2009	2010	2009	2010	차이
복지총괄	132.84	975.08	54.00	56.99	+2.99
노인복지	305.05	638.80	75.14	69.28	-5.86
아동·청소년복지	195.59	460.08	54.48	81.00	+26.52
보육	109.72	363.52	52.00	64.00	+12.00
장애인	355.60	515.35	65.25	55.00	-10.25
지역사회서비스	278.96	433.60	73.41	52.49	-20.92
기초생활보장	340.89	469.05	60.55	53.00	-7.55
자활	73.20	330.24	60.00	48.00	-12.00
의료급여	126.15	353.80	87.00	58.00	-29.00

제3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진도군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총괄 영역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68.05점)보다 매우 낮은 58.00점에 머물렀고,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도 전국 평균(67.75점)보다 매우 낮은 57.00점에 머물렀음.
-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는 전국 평균(59.85점)보다 미미하게 낮은 55.00점이었음.
- 노인복지 영역 중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97.53점)보다 높은 100점이었던 반면,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전국 평균(70.13점)보다 현저히 낮은 40.00점으로 기본점수만을 획득한 결과를 보였음.
- 아동·청소년 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은 전국 평균(65.54점)보다 높은 81.00점을 나타내어 양호한 결과를 보였음.
- 보육 영역인 「보육서비스 확대」는 전국 평균(67.50점)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64.00점을 나타냈음.
- 장애인복지 영역은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모두 전국 평균(각각 63.31점, 66.79점)보다 제법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모두 55.00점이었음.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64.59점)보다 현저히 낮은 40.00점으로 기본점수만을 획득하였고, 대조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69.60점)과 유사한 70.00점을 나타냈음.
- 기초생활보장 영역인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55.90점)보다 약간 낮은 53.00점이었음.
- 자활영역인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62.25점)보다 매우 낮은 48.00점에 불과하였음.
- 의료급여 영역인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71.59점)보다 현저히 낮은 58.00점에 그쳤음.

〈표 2-4〉 각 영역의 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68.05	58.00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100	59.85	55.00
	민간복지지원 활성화	100	67.75	57.00
노인복지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70.13	40.00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	100	97.53	100.00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100	65.54	81.00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100	67.50	64.00
장애인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100	63.31	55.0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79	55.00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4.59	40.00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69.60	70.00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55.90	53.00
자활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100	62.25	48.00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1.59	58.00

제4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 복지총괄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26.68점)보다 높은 28.00점이었고,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42.04점)과 유사한 42.00점이었음.
- 그 외의 세부 평가지표인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 활동 시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등의 평가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또는 다소 낮았음.

〈표 2-5〉 복지총괄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60.00	42.04	42.00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40.00	26.01	16.00
	계	100.00	68.05	58.00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100.00	59.85	55.00
	계	100.00	59.85	55.00
민간복지지원 활성화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30.00	20.72	17.00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40.00	26.68	28.0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요원 배치율	30.00	20.36	12.00
	계	100.00	67.75	57.00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수

— (민간복지종사자수 / 인구수) × 10,000

— 인구 수 : 2009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 민간복지종사자수 = 이용시설 종사자수+ 생활시설 종사자수

— 민간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목에 따라 설립, 신고된 시설 및 법인(단, 비인가, 임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보육시설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복지종사자 현황 기준으로 함. 시스템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

이용시설 종사자수(A)	생활시설 종사자수(B)	전체인구수 (C)	인구10,000명당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 {(A+B)/C}×10,000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 평균
58	5	33,931	18.567	84.236	1.401	22.711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율

- $\{(0.4 \times (\text{보조금신청보고 사회복지시설수} / \text{사회복지시설 수})) + (0.3 \times (\text{종사자보고 사회복지시설 수} / \text{사회복지시설 수})) + (0.3 \times (\text{입소자보고 사회복지시설수} / \text{사회복지시설 수}))\} \times 100$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수 :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수
 - 여성, 보육, 청소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 (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 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 보조금신청(법인시설 한), 종사자(전체시설), 입소자(생활시설 한) 온라인보고 후 승인 처리된 사회복지시설 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산출

대상 사회복지시설 수			온라인보고 후 승인처리된 사회복지 시설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보조금 신청(A)	종사자 보고(B)	입소자 보고(C)	보조금 신청(D)	종사자 보고(E)	입소자 보고(F)	$\{(D/A \times 0.4) + (E/B \times 0.3) + (F/C \times 0.3)\} \times 100$			
16	22	2	5	19	1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 평균
						53.409	100.000	30.596	74.875

나.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정도

-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times 2$) + (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시범평가기관 참여여부 $\times 3$) / 지자체수
-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

당 안 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였는지를 의미.

* 반드시, '09.11월말까지 심의를 받은 실적에 한함(이후 실적은 불인정)

— 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시범평가기관 참여여부

- 복지부 지역복지과-321(09.2.2)호에 따라 시범평가 및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에 한함

2010년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이행여부(A)	2008년 시범평가관 및 컨설팅 참여여부(B)	지자체 수 (C)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A \times 2) + (B \times 3)\} / C$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 평균
1	0	1	2.000	5	0	2.082

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 활동 자원봉사자 연간 총 봉사시간 / 활동 자원봉사자 수
- 연간 총 봉사시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에 등록된 활동자원봉사자 수 (연간 총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 및 활동 봉사시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포함되지 않음(이중등록)

VMS등록 활동자원봉사자수(A)	VMS등록 활동자원봉사자 연간 총 봉사시간(B)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시간 B/A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 평균
175	484,960	2,771.200	7,310.366	1,752.842	3,185.126

○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 $\frac{(((\text{'09년 기부식품 등 총액} - \text{'08년 기부식품 등 총액}) / \text{'08년 기부식품 등 총액}) \times 100}{\text{'08년 기부식품 등 총액}} \times 0.7 + \frac{(((\text{'09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 - \text{'08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 / \text{'08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 \times 100}{\text{'08년 기부식품 등 이용자}} \times 0.3$
-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 지원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한 식품중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 받은 식품 등의

『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

- FMS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기부식품 제공 및 관리시스템
- 전국·광역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지원사업자로부터 이관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실적)
- 기부식품 등 연간 이용자 : 기부식품 지원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는 기부식품 이용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이용자 포함)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자 증가율			식품기부량및 이용자증가율 [(C×0.7)+(F×0.3)]			
'09년 기부식품 등 총액(A)	'08년 기부식품 등 총액(B)	$C = \{(A-B)/B\} \times 100$	'09년 이용자(D)	'08년 이용자(E)	$F = \{(D-E)/E\} \times 100$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평균
6,200,000	3,600,000	72.222	704	704	0.000	50.556	2,860,913	-92.263	87.206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 (사회복무요원 활용인원 / 사회복지시설수)×100
 - 사회복지시설 수 : 2009년 말 기준 사·군·구에 등록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수(단, 경로당, 보육시설 제외, 푸드뱅크·푸드마켓 제외)
 - 행복e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수만 인정
 - 사회복지무원수 : 당해연도 말 기준 복무중인 사회복지무원수(병무청 확인)

사회복지 시설수(A)	사회복무요원 활용인원수(B)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B/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9	4	21.053	196.667	0.000	52.212

2. 노인복지

- 노인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기초노령연금의 부적정 급여관리’는 전국 평균(47.53점)보다 높은 50.00점으로 만점을 차지하였고, ‘변동자료 적기처리’ 역시 전국 평균(50.00점)과 동일

한 50.00점 만점을 차지하였음.

- 그 외의 세부 평가지표인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 평균(70.13점)보다 현저히 낮은 40.00점으로 기본점수만을 획득하였음.

〈표 2-6〉 노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100.00	70.13	40.00
	계	100.00	70.13	40.00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	변동자료 적기처리	50.00	50.00	50.00
	부적정 급여관리	50.00	47.53	50.00
	계	100.00	97.53	100.00

가.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text{노인요양시설 총정원} / \text{노인요양 시설 이용대상}) \times 100$
-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09년 12월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 지정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
 - 요양시설 총 정원 근거 : 시군구에 설치 신고된 시설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 $\times 0.016$
 - 0.016 : 2010년도 수요 (시설입소 대상)를 전국 평균한 값
 - 65세이상 인구수는 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요양시설 총 정원 (A)	시설이용대상(B)	노인요양시설 총족률(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8	151	11.921	409.467	0.000	113.123

나.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정성

○ 변동자료 적기처리

- (처리기한 내 승인처리건수/총 수신건수) × 100
- 처리기한내 승인처리건수 : 배우자, 개인정보, 소득재산변동, 확인 대상자 등 변동사항을 처리기한 내 승인한 비율
- 처리기한 : 2009.1.1~5.31 30일 이내, 2009.6.1~이후 매월 25일까지

처리기한 내 승인처리건수(A)	총 수신건수(B)	변동자료 적기처리 (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2,535	2,675	94.766	100.000	84.193	97.547

○ 부적정 급여관리

- $(\frac{\text{부당수급환수액}}{\text{부당수급발생액}}) \times 100$
- 사망, 소득·재산 기준초과 등으로 발생한 부당 수급 발생액
- 발생한 부당수급액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한 금액

부당수급 발생액 (A)	부당수급 환수액 (B)	부적정 급여관리(B/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922	1,409	73.309	100.000	28.015	72.951

3.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전국 평균(18.29점)보다 높은 30.00점이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역시 전국 평균(30.000점)보다 다소 높은 34.00점을 차지하였음.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율’은 전국 평균(17.19점)과 유사한 수준인 현저히 17.00점에 그쳤음.

〈표 2-7〉 아동·청소년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아동·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30.00	18.29	30.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40.00	30.07	34.00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율	30.00	17.19	17.00
	계	100.00	65.54	81.00

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left(\left(\frac{\text{단속 횟수}}{\text{청소년유해업소 수}} \times 0.3 \right) + \left(\frac{\text{적발 건수}}{\text{청소년유해업소 수}} \times 0.7 \right) \right) \times 100$$

- 청소년유해업소 수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을 말하며, 유해업소수는 새울시스템에 입력된 유해업소수를 적용
- 단속횟수 :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시행한 단속계획서와 그 결과보고서 기준 ⇒ 기간과 팀(조)을 정하여 단속 명령한 경우
 - 단속횟수는 1일 1팀을 1회로 봄 (2팀 이상으로 결재한 경우 1일 2회 이상으로 봄) (예: 5일간 5개팀이 단속한 경우 25회로 인정)
 - 팀(조) 당 편성인원 : 3인 이상
 - 팀(조)을 정하지 않고 기간만을 정하여 단속 명령한 경우, 단속횟수는 1일 1회로 봄
- 적발건수 : 청소년관련부서에서 단속계획에 의거 실시한 단속에서 청소년

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단속결과보고서상 적발한 건수를 말함

- 중앙부처 합동단속, 관할 경찰관서 또는 시군구 식품위생관련 단속(점검) 팀 등에서 적발한 건수는 제외

단속횟수 (A)	적발 건수 (B)	청소년 유해업 소수(c)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A/C]×0.3 + (B/C)×0.7]×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56	0	268	6.269	40.909	0.000	3.254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text{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 \times 0.7) + (\text{CYS-Net 시행 자치단체} \times 0.3)] / \text{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A)	CYS-Net 시행여부(B)	자자체 수(c)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활성화정도 {[(A×0.7)+(B×0.3)]/C}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	0	1	0.7	1	0	0.574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 저축율 = $\frac{\text{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수 중 저축아동수}}{\text{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수}} \times 100$
- 저축률 : 09.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월 평균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아동중 저축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으로, 만 0~17세 아동
- 계좌개설아동 중 만기 도래 및 중도해지 아동은 제외함

디딤씨앗 통장개설 아동수(A)	디딤씨앗 통장개설 아동중 저축아동수(B)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B/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75	69	92.000	100	80	92.209

4. 보육

□ 보육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는 전국 평균(11.19점)보다 현저히 낮은 8.00점이었음.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과 ‘취약보육실시율’은 전국 평균(각각 35.23점, 21.07점)에 비해 미미하게 낮은 35.00점, 21.00점이었음.

〈표 2-8〉 보육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보육서비스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20.00	11.19	8.00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50.00	35.23	35.00
	취약보육실시율	30.00	21.07	21.00
	계	100.00	67.50	64.00

가.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 (09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08년 국공립보육시설수)
 - 국공립 보육시설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 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08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A)	09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B)	전체영유아 수(C)	보육시설 정원 수 (D)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 (E)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 영유아 수(F)	지자체 수(N)
1	1	1,330	741	635	51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B>A	(B2-B1=0)					
(B-A)/N	①=(D/C)	②=(F/E)	계 ①+②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0	0.557	0.080	0.637	1.225	0.421	0.727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을

$$- \frac{(\text{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1) + 09\text{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2}$$

$$- \text{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 = \frac{\text{평가인증 보육시설수}}{\text{전체 보육시설수}(08\text{년말})} \times 100$$

$$- 09\text{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 = \frac{09\text{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text{전체 보육시설수}(08\text{년말})} \times 100$$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과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의 평균값

-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 구시군의 08년말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08년말 전체 보육시설 중 09년도에 평가 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전체보육시설수 (‘08년말)(A)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B)	09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c)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B/A)+(C/A)}] × 100]/2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0	6	2	40.000	72.034	11.765	40.692

○ 취약보육실시율

$$- \frac{\text{영아, 장애아, 다문화영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파악함

- 취약보육실시율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대비 영아, 장애아, 다문화영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비율을 의미함.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영아는 만 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 동 수(A)	영아 보육 이용 수(B)	장애아 보육 이용 수(C)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수(D)	시간연 장형 보육이 용수(E)	휴일보육 이용수 (F)	취약보육실시율 (B+C+D+E+F)/A) ×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635	278	0	23	3	0	47.874	67.917	36.132	49.954

5.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전국 평균(17.17점)보다 매우 높은 25.00점으로 만점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으며, ‘우선구매비율 준수율’도 전국 평균(31.53점)보다 높은 35.00점이었음.

〈표 2-9〉 장애인복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25.00	15.61	10.00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50.00	30.53	20.00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25.00	17.17	25.00
	계	100.00	63.31	55.0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00	31.53	35.00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30.00	21.03	12.00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20.00	14.23	8.00
	계	100.00	66.79	55.00

- 이들 세부 지표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등은 전국 평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40%)를 획득하는데 그쳤음.

가.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 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 시설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 :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지자체 제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통계)자료에 의함
- 등록장애인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장애인복지법의 지자체 조례에 의한 시설(ex, 자활자립장 등)은 제외

등록장애인 수 (A)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B)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설치율 (B/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3,275	0	0.000	3.949	0.000	0.502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 수)×100
- 거주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 거주시설의 입소장애인 정원수 : 시설의 입소 정원 총 수
 - 지자체 제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통계)자료에 의함
- 등록장애인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 개인운영시설(완화된 시설기준 적용)은 제외

등록장애인 수 (A)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정원 (B)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B/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3,275	0	0.000	12.007	0.000	1.347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수 / 등록장애인 수) × 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등록장애인 수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 복지부 자료에 의함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A)			등록장애인 수(B)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A/B)*100			
A=①+②	장애수당①	장애아동수당②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216	1,182	34	3,275	37.130	43.717	7.313	22.159

나.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품목 수) × 100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수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1개 품목으로 처리

우선구매비율 총적품목수(A)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수(B)	우선구매 비율 준수를 (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7	7	100.000	100.000	22.222	87.970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총액 :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우선구매대상 품목중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A)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총액 (B)	우선구매 대상 품목구매비율 (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32,227	65,518	49.188	99.690	1.863	64.222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 (우선구매대상 외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우선구매대상품목구매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품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상, 하반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함
 - 품목별 우선구매 현황목록은 ‘09년 12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우선구매대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A)	우선구매대외 품목 구매총액(B)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0	0	0.000	100	0	49.639

6.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전국 평균(69.61점)과 유사한 70.0점이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율’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은 전국 평균(각각 32.59점, 31.99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40%)를 획득하는데 그쳤음.

〈표 2-10〉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지역사회서비스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율	50.00	32.59	20.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50.00	31.99	20.00
	계	100.00	64.59	40.00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 추진의 적정성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100.00	69.61	70.00
	계	100.00	69.60	70.00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율
 - $(\text{'09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건수} / \text{시군구수}) \times 100$
 - 시행건수 : ‘09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09년 2월~’10년 1월 시행된 사업해당)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투자사업시행건수(A)	시군구수(B)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A/B)*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	1	100.000	1,000.000	0.000	246.98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 $\{(\text{제공기관수} / \text{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 + (\text{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수} / \text{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사업수})\} \times 100$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중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전체 사업수 (A)	제공기 관수 (B)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C)	B/A	C/A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 $\{(B/A)+C/A\} \times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	1	0	1.000	0.000	100.000	1,900.000	0.000	289.2

나. 사회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의 적정성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 $(\text{이용액} / \text{생성액}) \times 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이용액(A)	생성액(B)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실적(이용률) $(A/B) \times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451,829,792	502,033,290	90.000	94.475	76.378	89.310

7.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수’는 전국 평균(13.47점) 보다 현저히 높은 21.00점이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과 ‘급여조정 실적’은 전국 평균(각각 13.47점, 10.97점)과보다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 (40%)를 획득하는데 그쳤음.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과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은 모두 전국 평균 (각각 8.98점, 9.01점)보다 다소 낮은 7.00점이었음.

〈표 2-11〉 기초생활보장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25.00	13.47	10.00
	급여조정 실적	20.00	10.97	8.00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15.00	8.98	7.00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수	25.00	13.47	21.00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	15.00	9.01	7.00
	계	100.00	55.90	53.00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정성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text{신규 수급자 수} / \text{총수급자 수}) \times 100$
 - 신규수급자수 : '09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수급자 수 : '09.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

신규 수급자수(A)	총 수급자수(B)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A/B)*100				상위순위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226	3,209	7.043	26.834	6.295	14.427	99.57

- 급여조정 실적
 - $(\frac{\text{보장증지건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5) + (\frac{\text{급여감소건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25) + (\frac{\text{급여증가건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25)$

- 보장중지 건수 : 수급자에서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 건수 :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 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 (현금급여)에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 가구수 : '09.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 수

보장 중지 건수 (A)	급여 감소 건수 (B)	급여 증가 건수 (C)	수급 자가 가구 (D)	(A/D)*0.5	(B/D)*0.25	(C/D)*0.25	급여조정 실적 [(A/D)×0.5]+[(B/D)×0.25]+[(C/D)×0.25]				상위 순위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219	1,826	758	2,005	0.055	0.228	0.095	0.377	0.738	0.057	0.410	68.53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 $\frac{\text{'09년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text{'08년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 \times 100$
- '08년 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 대비 '09년 전체긴급지원결정건수

'09년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A)	'08년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B)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A/B)×100				상위순위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94	32	293.750	1,948.3	72.222	366.954	51.72

○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 수

- (수급 가구 수/정책 대상 가구 수)× 100
- 정책대상자 : '09년도 시군구별 한시생계보호 정책대상목표인원
- 수급 가구 : '09년 한시생계보호 수급 가구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수급 가구 수(A)	정책대상 가구수(B)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가구수 (A/B)×100				상위순위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522	1,150	132.348	179.89	38.524	94.252	7.76

○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

- (시군구 신규대출건수-전국 평균 대출건수)/전국 평균 대출건수 ×100

- 전국 평균 대출건수: '09.12.31 기준, 서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대출실행 건수
- 시군구 신규대출건수: '09.12.31 기준의 대출 실적
- 행복e음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및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 (실적)에 의함

신규대출건수(A)	전국 평균 대출건수(B)	시군구 신규 대출실적 $\{(A-B)/B\} \times 100$				상위순위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0	38	-100.000	573.68	-100.000	-0.159	96.12

8. 자활

□ 자활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자활기금 활용실적'은 전국 평균(9.67점) 보다 다소 높은 11.00점이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와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전국 평균(각각 12.03점, 20.17점)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한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40%)를 획득하는데 그쳤음.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평균(20.38점)보다 다소 낮은 17.00점이었음.

〈표 2-12〉 자활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	20.00	12.03	8.00
		자활기금 활용실적	20.00	9.67	11.00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00	20.17	12.00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30.00	20.38	17.00
		계	100.00	62.25	48.00

가.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지원 규모

- (사업장 무상임대+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사업우선위탁 실적+자체예산 교육지원)/지자체수
- 사업장 무상임대 : 임대비용 공시지가 및 과표(건물)
-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구매총금액 작성
- 사업우선위탁 실적 : 구매총금액 작성
- 자체예산 교육지원 등 :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참여자 역량강화 및 사업 활성화 등의 직, 간접 지원액
- 간접지원액은 공식절차 입증가능하며 금액환산이 가능한 경우 인정

무상임대 (A)	우선구매 및 우선 위탁(B)	자체예산 활용지원(C)	지자체 수(D)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사업 운영 지원 액수 (총지원액) (A+B+C)/D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0	42,000	0	1	42,000.000	3,926,830.000	0.000	294,870.319

○ 자활기금 활용실적

- $\frac{\text{자활기금 집행액}}{\text{자활기금 보유액}} \times 100$
- 자활기금 보유액 : 전년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자활계정) 총액
- 자활기금 집행액 : 당해연도 자활기금 용도로 집행한 총액

자활기금보유액(A)	집행액(B)	자활기금 활용실적 (B/A) ×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269,271	14,700	5.459	1,824.342	0.000	13.215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 (자활사업참여수급자중 취업인원+창업인원)/자활사업참여 수급자수×100
- 취업 및 창업한 인원 : 업그레йд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누계)
- 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개인창업+취업

알선 +노동부사업

- 자활공동체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이므로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취업 창업한 실적은 제외하며, 다른 업그레이드사업 참여자가 자활공동체를 창업한 경우는 창업실적으로 포함
- 복지부 자료 활용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중 취업인원(A)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B)	자활사업 참여수급자(C)	수급자의 취업및 창업률 $\{(A+B)/C\} \times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0	0	23	0.000	80.000	0.000	9.076

○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frac{\text{탈수급자 수}^1)}{\text{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2)} \times 100$
- 탈수급자 수 :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 +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누계) 수급자수
 -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계(A) (①+②+③)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자수(①)	특례상향 이동자(②)	기타소득기 준초과자(③)	자활사업참 여수급자(B)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 \times 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	0	0	1	23	4.348	60.000	0.000	9.215

9. 의료급여

- 의료급여 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진도군의 평가결과와 전국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과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율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은 전국 평균(각각 21.30점, 14.14점)과 유사한 수준인 각각 21.00점, 14.00점이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19.01점)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한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40%)를 획득하는데 그쳤음.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17.14점)보다 낮은 13.00점이었음.

〈표 2-13〉 의료급여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별 전국 평균 및 진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진도군
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25.00	17.14	13.00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30.00	21.30	21.00
	사례관리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25.00	19.01	10.00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율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20.00	14.14	14.00
	계	100.00	71.59	58.00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 입·내원일수 1년 증감률 + 입·내원일수 3년 평균 증감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내원일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2008년도 적용인구1인 당입·내원 일수(A)	2009년도 적용인구1인 당입·내원 일수(B)	2007년도 적용인구1인 당입·내원 일수(C)	(B-A)/A *100	(B-C)/C/3 *100	수급권자1인당 평균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B-A)/A)×100]+[(B-C)/C]/3]×100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평균
49	57	45	16.327	8.889	25.215	99.839	-2.336	16.801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A)	2009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B)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C)	(B-A)/A *100	(B-C)/C/3 *100	수급권자1인당 평균진료비 증감률 [[{(B-A)/A×100}]+[{(B-C)/C}/3]×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2,318	2,936	2,096	26.661	13.359	40.020	492.170	2.075	28.975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 $\{('09\text{년 } 1\text{인당 평균급여일수} - '08\text{년 } 1\text{인당 평균급여일수}) / '08\text{년 } 1\text{인당 평균급여일수}\} \times 100$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13개 지역)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자만 해당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A)	2009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B)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B-A)/A×100			
		진도군	전국 최고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047	1,190	13.658	278.358	-58.828	6.447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 (채용인원/배치기준인원)×100
 -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6천명미만 : 1명
- 수급권자 6천명 ~ 15천명 미만 : 2명
- 수급권자 15천명 ~25천명미만 : 3명
- 수급권자 25천명이상 :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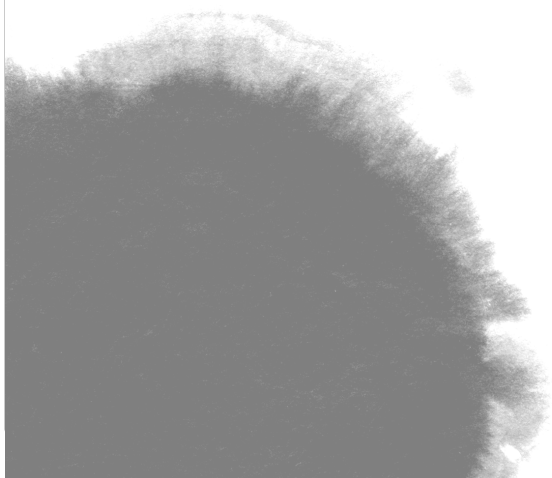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2천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배치
- ※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 (연간 종결인원 실적/연간 종결인원 기준)×100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대상자수를 파악함
- 일반사례관리지역 1인당 연간종결인원 240명
- 텔레케어사업지역 1인당 연간종결인원 800명
(기존의료급여관리사 1명은 일반사례관리지역 대상자수 적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A)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B)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 관리대상자 비율 A+B			
채용 인원 (a)	배치기 준인원 (b)	(a/b) ×100	사례관리대상자 수 연간종결인원 실적(c)	사례관리 대상자 연간종결인원 기준(d)	(c/d) ×100	진도군	전국최고	전국최저	전국평균
1	1	100.000	164	240	68.333	168.333	654.792	63.611	211.040

03

진도군민의 복지욕구



제3장 진도군민의 복지욕구

제1절 진도군민의 복지수요¹⁾

1. 저소득층 분야

□ 일반현황

- 저소득층 일반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의견 차이를 보기 위해 구분하여 분석함.

〈표 3-1〉 성별 · 저소득층

(단위: 명, %)

성별	저소득층			계
	수급권자	조건부 수급권자	차상위	
남성	34.1	20.0	20.7	100.0(21)
여성	65.9	80.0	79.3	100.0(54)

자료: 제2기 진도군 지역복지계획수립 자료(2010) 참조

□ 주거환경

- 저소득층에게 거주지역에 대해 물은 결과, 좋은 곳이라는 응답이 34.7%로 열악하다는 의견(32.0%)보다 조금 많았고 열악한 곳이라는 응답도 32.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1) 제2기 진도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의 ‘지역수요의 현황 분석’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함.

〈표 3-2〉 거주지역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매우 좋은 곳	좋은 곳	보통	열악한 곳	매우 열악한 곳	합 계
빈도	4	26	18	24	3	75
%	5.3	34.7	24.0	32.0	4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21.4%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3〉 주거문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심각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합 계
빈도	3	11	45	14	2	75
%	4.0	14.7	60.0	18.7	2.7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진도군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응답자의 66.7%가 (대체로/매우) 심각하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10.7%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함.

〈표 3-4〉 소득불평등 문제

(단위: 명, %)

구분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합 계
빈도	5	20	42	8	75
%	6.7	26.7	56.0	10.7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61.4%가 (대체로/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함.

〈표 3-5〉 고용문제

(단위: 명, %)

구분	전혀 심각않음	심각하지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합 계
빈도	1	8	20	35	11	75
%	1.3	10.7	26.7	46.7	14.7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복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7%가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대체로/매우) 심각하다고 답함.

〈표 3-6〉 복지시설 부족 문제

(단위: 명, %)

구분	전혀 심각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합 계
빈도	2	10	31	29	3	75
%	2.7	13.3	41.3	38.7	4.0	100.0

- 어려운 문제
- 저소득층의 직업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심각하다고 답하였고, 부채에 대해서는 49.4%가, 의료에 대해 60.0%가 심각하다고 말함.
 - 부양문제에 대해 40.0%가 심각하다고 말하였고,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60.0%, 교통에 대해서는 45.4%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표 3-7〉 어려운 문제(1)

(단위: 명, %)

구 분	직 업		부 채		의 료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심각 않음	2	2.7	3	4.0	1	1.3
심각하지 않음	12	16.0	10	13.3	3	4.0
보통	17	22.7	25	33.3	26	34.7
대체로 심각	35	46.7	26	34.7	40	53.3
매우 심각	9	12.0	11	14.7	5	6.7
합계	75	100.0	75	100.0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8〉 어려운 문제(2)

(단위: 명, %)

구 분	부양		자녀양육		교통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심각 않음	2	2.7	3	4.0	2	2.7
심각하지 않음	10	13.3	12	16.0	12	16.0
보통	33	44.0	14	18.7	27	36.0
대체로 심각	26	34.7	34	45.3	23	30.7
매우 심각	4	5.3	11	14.7	11	14.7
무응답	-	-	1	1.3	-	-
합계	75	100.0	75	100.0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은 용자(주택수리비, 전·월세)가 45.4%로 가장 높았고, 시설입소 등 거처 제공에 대한 응답이 13.3%로 나타남.

〈표 3-9〉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저소득층	
	빈도	%
주택수리비용자	26	34.7
전(월)세 자금 융자	8	10.7
임대주택입주	5	6.7
시설입소 등 거처 제공	10	13.3
주거이전시 지원	3	4.0
도움 필요없음	21	28.0
기 타	2	2.7
합계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이거나 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는 가정은 64.0%로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으며, 그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12.0%이었음.

〈표 3-10〉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여부

(단위: 명, %)

구 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빈도	%
그렇다	48	64.0
아니다	22	29.3
무응답	5	6.7
합계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다고 답하였으며,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항상 걱정하는 응답자도 49.3%를 차지하였음.
- 또한 개인문제로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많았음.

〈표 3-1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단위: 명, %)

구분	지원액 충분		절차 까다로움		탈락여부 걱정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아니다	6	8.0	1	1.3	1	1.3
아니다	32	42.7	3	4.0	5	6.7
보통이다	8	10.7	10	13.3	5	6.7
그렇다	2	2.7	32	42.7	30	40.0
매우 그렇다	-	-	2	2.7	7	9.3
무응답	27	36.0	27	36.0	27	36.0
합계	75	100.0	75	100.0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12〉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단위: 명, %)

구 분	개인문제		가족문제		가족 서비스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아니다	1	1.3	1	1.3	2	2.7
아니다	9	12.0	11	14.7	5	6.7
보통이다	16	21.3	18	24.0	13	17.3
그렇다	21	28.0	18	24.0	26	34.7
매우 그렇다	1	1.3	-	-	2	2.7
무응답	27	36.0	27	36.0	27	36.0
합계	75	100.0	75	100.0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사회복지 분야 및 시설

- 진도군이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분야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38.7%), 노인복지(13.3%), 장애인 복지(13.3%) 순이었음.
- 진도군민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생계비 등의 현금지원(66.7%), 사회복지,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서비스(24.0%) 등으로 나타남.

〈표 3-13〉 진도군에서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분야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저소득층 복지	29	38.7
노인 복지	10	13.3
장애인 복지	10	13.3
아동 복지	8	10.7
청소년 복지	8	10.7
여성 복지	6	8.0
기타	4	5.3
합계	75	100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14〉 진도군민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
현금지원(생계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50	66.7
현물(쌀, 연탄, 기름, 휠체어, 보청기 등)	4	5.3
서비스 지원(사회복지,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18	24.0
보호시설의 확충(장애인시설,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3	4.0
합계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15〉 진도군 복지재정에 대한 생각(저소득층)

(단위: 명, %)

구분	저소득층	
	빈도	%
매우충분	1	1.3
충분	2	2.7
보통	31	41.3
부족	37	49.3
매우부족	4	5.3
합계	7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소득 및 부채

- 저소득층의 2009년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약 50만원으로 나타남.

〈표 3-16〉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단위: 명,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75명	9	120	50.12	28.680

자료: <표 3-1>과 동일

-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는 평균 785만원으로 조사됨.

〈표 3-17〉 가구 전체 월평균 부채

(단위: 명,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74명	0	5,000	785.14	1272.220

자료: <표 3-1>과 동일

2. 노인 분야

-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은 89.5%이며, 2시간 이내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36.8%로 나타남.

〈표 3-18〉 자녀가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2시간 이내의 자녀	
	빈 도	%	빈 도	%
있다	136	89.5	56	36.8
없다	16	10.5	80	52.6
무응답	-	-	16	10.5
합계	152	100.0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50.0%가 사별중이며, 49.3%는 기혼(유배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표 3-19〉 혼인상태

(단위: 명)

구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빈 도	%
기혼(유배우)	75	49.3
기혼(사 별)	76	50.0
기타	1	0.7
합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경제활동

- 취업자는 30.9%였으며 비취업자 중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8.6%로 나타남.

〈표 3-20〉 경제활동 여부 및 의향

(단위: 명, %)

수입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경제활동 의향(수입이 없는 사람 중)		
구분	빈 도	%	구분	빈 도	%
있다	47	30.9	하고 싶다	72	68.6
없다	105	69.1	하고 싶지 않다	32	30.5
무응답	-	-	무응답	1	0.9
합계	152	100.0	합계	105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만원이며, 노인부부의 공동수입액은 월 평균 48만원, 부동산 소유액은 평균 1,537만원, 동산 소유액은 556만원, 부채는 380만원이었음.

〈표 3-21〉 소득 및 재산상태

(단위: 명, %)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 수입	129	0	200	33.81	47.796
공동 월 수입액	131	8	200	48.11	46.044
부동산	128	0	40,000	1536.80	3955.510
동산	109	0	5,000	556.15	1051.496
부채	128	0	15,000	379.69	1533.683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의 주 수입원은 일/직업(근로/사업/부업)이 19.1%로 가장 많았고 수입원 2순위는 기초노령연금이 14.5%로 많았음.

〈표 3-22〉 어르신들의 수입원

(단위: 명, %)

구분	주 수입원(1순위)		주 수입원(2순위)	
	빈도	%	빈도	%
일/직업(근로/사업/부업)	29	19.1	2	1.3
개인재산/금융/연금(이자/임대)	3	2.0	3	2.0
자녀/친인척	3	2.0	3	2.0
공적연금/사회보험	3	2.0	4	2.6
기초노령연금	3	2.0	22	14.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	0.7	-	-
기타	5	3.3	2	1.3
무응답	105	69.1	116	76.3
합계	152	100.0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71.7%가 노인대학·학교·교실을 알고 있으나 27.0%만이 이용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약 64.5%가 향후 이용의향을 표명함.

〈표 3-23〉 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8	31.6	있다	41	27.0	있다	98	64.5
조금안다	61	40.1	없다	109	71.7	없다	37	24.3
모른다	43	28.3	무응답	2	1.3	무응답	17	11.2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81.6%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었고 32.9%는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3.7%는 향후 이용의향을 보임.

〈표 3-24〉 노인(종합)복지(회)관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53	34.9	있다	50	32.9	있다	112	73.7
조금안다	71	46.7	없다	100	65.8	없다	24	15.8
모른다	27	17.8	무응답	2	1.3	무응답	16	10.5
무응답	1	0.7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경로당(노인정)은 가장 인지도, 이용경험이 높았으며 향후 이용의향도 8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3-25〉 경로당(노인정)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24	81.6	있다	130	85.5	있다	127	83.6
조금안다	25	16.4	없다	18	11.8	없다	7	4.6
모른다	1	0.7	무응답	4	2.6	무응답	18	11.8
무응답	2	1.3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기초노령연금도 경로당(노인정)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지도, 이용경험률, 이용의향률을 보임.

〈표 3-26〉 기초노령연금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22	80.3	있다	131	86.2	있다	133	87.5
조금안다	30	19.7	없다	20	13.2	없다	2	1.3
모른다	-	-	무응답	1	0.7	무응답	17	11.2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90.8%로 높았으나 이용경험은 이보다 낮은 38.8%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의향도 75.0%로 인지도보다 다소 낮음.

〈표 3-27〉 노인일자리사업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80	52.6	있다	59	38.8	있다	114	75.0
조금안다	58	38.2	없다	92	60.5	없다	23	15.1
모른다	14	9.2	무응답	1	0.7	무응답	15	9.9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공동작업장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지도에 비해 낮은 이용경험율을 보임.

〈표 3-28〉 노인공동작업장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1	7.2	있다	1	0.7	있다	60	39.5
조금안다	28	18.4	없다	148	97.4	없다	77	50.7
모른다	113	74.3	무응답	3	2.0	무응답	15	9.9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13.2%로 나타났고, 이용경험자는 단 1명의 응답자도 없었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인지도보다 높은 34.2%로 나타남.

〈표 3-29〉 노인취업알선센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8	5.3	있다	-	-	있다	52	34.2
조금안다	12	7.9	없다	150	98.7	없다	86	56.6
모른다	131	86.2	무응답	2	1.3	무응답	14	9.2
무응답	1	0.7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 인력지원기관(지역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지도는 12.5%였으나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32.9%이었음.

〈표 3-30〉 노인 인력지원기관(지역시니어클럽)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7	4.6	있다	-	-	있다	50	32.9
조금안다	12	7.9	없다	150	98.7	없다	88	57.9
모른다	133	87.5	무응답	2	1.3	무응답	14	9.2
무응답	-	-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노인전문병원의 인지도는 78.9%이며, 이용경험률 3.3%, 향후 이용의향 48.7%로 나타남.

〈표 3-31〉 노인전문병원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2	27.6	있다	5	3.3	있다	74	48.7
조금안다	78	51.3	없다	145	95.4	없다	64	42.1
모른다	31	20.4	무응답	2	1.3	무응답	14	9.2
무응답	1	0.7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양로시설의 인지도는 73.7%로 높았으나 이용경험율은 2.6%로 낮게 나타났고
향후 이용의향은 47.4%이었음.

〈표 3-32〉 양로시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6	30.3	있다	4	2.6	있다	72	47.4
조금안다	66	43.4	없다	146	96.1	없다	65	42.8
모른다	40	26.3	무응답	2	1.3	무응답	15	9.9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34.9%이며 향후 이용의향도 이와 비슷한
33.6%로 나타남.

〈표 3-33〉 주간보호시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21	13.8	있다	4	2.6	있다	51	33.6
조금안다	32	21.1	없다	146	96.1	없다	84	55.3
모른다	99	65.1	무응답	2	1.3	무응답	17	11.2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경로식당/무료급식의 이용경험률은 4.6%로 매우 낮았으나 이용의향은 이보다 높은 63.8%로 이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임.

〈표 3-34〉 경로식당/무료급식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33	21.7	있다	7	4.6	있다	97	63.8
조금안다	55	36.2	없다	143	94.1	없다	39	25.7
모른다	64	42.1	무응답	2	1.3	무응답	16	10.5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이용경험율은 6.6%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향후 이용의향은 64.5%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35〉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36	23.7	있다	10	6.6	있다	98	64.5
조금안다	56	36.8	없다	140	92.1	없다	38	25.0
모른다	59	38.8	무응답	2	1.3	무응답	16	10.5
무응답	1	0.7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가사지원 서비스(가정봉사원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율은 각각 71.7%, 18.4%이었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75.7%이었음.

〈표 3-36〉 가사지원 서비스(가정봉사원 등)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0	26.3	있다	28	18.4	있다	115	75.7
조금안다	69	45.4	없다	123	80.9	없다	22	14.5
모른다	43	28.3	무응답	1	0.7	무응답	15	9.9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보장구 대여서비스(휠체어, 대·소변기)에 대한 인지도는 12.5%로 매우 낮았으나 향후 이용의향은 57.9%로 높은 욕구를 보임.

〈표 3-37〉 보장구 대여서비스(휠체어, 대·소변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9	12.5	있다	-	-	있다	88	57.9
조금안다	40	26.3	없다	150	98.7	없다	48	31.6
모른다	92	60.5	무응답	2	1.3	무응답	16	10.5
무응답	1	0.7	-	-	-	-	-	-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합 계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진도군에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1순위는 건강검진서비스 및 무료 순회 진료(36.2%), 2순위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알선서비스(21.7%)이었음.

〈표 3-3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건강검진서비스 및 무료 순회 진료	55	36.2	-	-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28	18.4	4	2.6
식사제공 서비스 확대	27	17.8	16	10.5
주간보호 서비스 확대	1	0.7	10	6.6
요양(보장구)시설 확대	3	2.0	2	1.3
읍면별 물리치료실 운영	15	9.9	20	13.2
읍면별 공동목욕장 운영	15	9.9	5	3.3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알선서비스	7	4.6	33	21.7
무응답	1	0.7	62	40.8
합계	152	100.0	15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3. 장애인 분야

○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하는 데 남의 도움이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50.0%)와 상당히 필요하다(25.9%)는 응답이 많았음.
-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배우자가 24.1%, 부모님이 17.2% 순으로 나타남.
-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는 75.5%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9.6%), 도보(30.2%), 일반 버스(17.0%)순이었음.

○ 어려운 문제 경험

- 사회적 차별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답자는 37.9%이었음.
- 응답자의 31.0%가 저소득, 부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응답자의 34.5%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음.

장애인 재활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56.9%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9〉 어려운 문제

(단위: 명, %)

구분	자녀양육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	빈도	%
전혀 문제없다	12	20.7	5	8.6
별로 문제없다	15	25.9	17	29.3
심한 편이다	16	27.6	25	43.1
매우 심하다	4	6.9	8	13.8
무응답	11	19.0	3	5.2
합계	58	100.0	58	100

자료: <표 3-1>과 동일

- 장애인의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17.2%로 매우 낮은 반면, 향후 이용의향은 67.2%로 높게 나타남.

〈표 3-40〉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0	17.2	있다	5	8.6	있다	39	67.2
조금안다	20	34.5	없다	50	86.2	없다	10	17.2
모른다	26	44.8	무응답	3	5.2	비해당	7	12.1
무응답	2	3.4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장애인공동생활 가정(그룹 홈)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각각 17.3%, 0%이며 향후 이용의향은 이보다 다소 높은 39.7%이었음.

〈표 3-41〉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3	5.2	있다	-	-	있다	23	39.7
조금안다	7	12.1	없다	54	93.1	없다	22	37.9
모른다	47	81.0	무응답	4	6.9	비해당	11	19.0
무응답	1	1.7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재활 병·의원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알고 있었으며 이용경험율도 39.7%로 다소 높았고 향후 이용의향은 보다 높은 72.4%로 파악됨.

〈표 3-42〉 재활 병·의원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1	19.0	있다	23	39.7	있다	42	72.4
조금안다	25	43.0	없다	33	56.9	없다	10	17.2
모른다	20	34.5	무응답	2	3.4	비해당	3	5.2
무응답	2	3.4	-	-	-	무응답	3	5.2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3%, 이용경험 있다가 5.2%, 이용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남.

〈표 3-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5	8.6	있다	3	5.2	있다	33	56.9
조금안다	12	20.7	없다	52	89.7	없다	14	24.1
모른다	39	67.2	무응답	3	5.2	비해당	9	15.5
무응답	2	3.4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교육재활의 이용경험률은 10.3%로 낮은 반면, 이용의향은 48.3%로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를 보임.

〈표 3-44〉 교육재활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8	13.8	있다	6	10.3	있다	28	48.3
조금안다	15	25.9	없다	47	81.0	없다	23	39.7
모른다	29	50.0	무응답	5	8.6	비해당	-	-
무응답	6	10.3	-	-	-	무응답	7	12.1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사회재활훈련한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은 각각 43.1%, 13.8%, 65.5%로 나타남.

〈표 3-45〉 사회재활훈련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6	10.3	있다	8	13.8	있다	38	65.5
조금안다	19	32.8	없다	49	84.5	없다	17	29.3
모른다	32	55.2	무응답	1	1.7	비해당	-	-
무응답	1	1.7	-	-	-	무응답	3	5.2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심리재활의 이용경험률은 13.8%인 반면, 향후 이용의향률은 현저히 높은 65.5%이었음.

〈표 3-46〉 심리재활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7	12.1	있다	8	13.8	있다	38	65.5
조금안다	12	20.7	없다	49	84.5	없다	17	29.3
모른다	38	65.5	무응답	1	1.7	비해당	-	-
무응답	1	1.7	-	-	-	무응답	3	5.2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39.7%, 13.8%, 77.6%로 나타남.

〈표 3-47〉 여가활동 프로그램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	6.9	있다	8	13.8	있다	45	77.6
조금안다	19	32.8	없다	50	86.2	없다	11	19.0
모른다	35	60.3	무응답	-	-	비해당	-	-
무응답	-	-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각각 58.6%, 32.8%이었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91.4%이었음.

〈표 3-48〉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2	20.7	있다	19	32.8	있다	53	91.4
조금안다	22	37.9	없다	38	65.5	없다	3	5.2
모른다	24	41.4	무응답	1	1.7	비해당	-	-
무응답	-	-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재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4%, 이용경험 있다가 20.7%, 이용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남.

〈표 3-49〉 재가서비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7	29.3	있다	12	20.7	있다	45	77.6
조금안다	25	43.1	없다	45	77.6	없다	11	19.0
모른다	16	27.6	무응답	1	1.7	비해당	-	-
무응답	-	-	-	-	-	무응답	2	3.4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소득보장(장애수당급여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각각 60.4%, 25.9%이었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이보다 높은 84.5%이었음.

〈표 3-50〉 소득보장(장애수당급여 등)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5	25.9	있다	15	25.9	있다	49	84.5
조금안다	20	34.5	없다	41	70.7	없다	4	6.9
모른다	21	36.2	무응답	2	3.4	비해당	-	-
무응답	2	3.4	-	-	-	무응답	5	8.6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합 계	5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4. 여성분야

□ 경제활동

- 여성 응답자 중 74.7%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1〉 소득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
종사하고 있다	127	74.7
종사하고 있지 않다	43	25.3
합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성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00만원이었음.

〈표 3-52〉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단위: 명,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27명	30	350	100.61	59.317

자료: <표 3-1>과 동일

- 가장 큰 비취업 이유로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양육, 교육문제가 35.0%로 나타남.

〈표 3-53〉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
자녀양육, 교육문제	14	35.0
건강상	8	20.0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	16	40.0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1	2.5
기타	1	2.5
합계	4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비취업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57.1%이었음.

〈표 3-54〉 취업을 원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
원한다	24	57.1
원하지 않는다	18	42.9
합계	42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해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16.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음(11.6%), 취업정보 부족(9.3%) 순이었음.

〈표 3-55〉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
취업정보 부족	4	9.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음	2	4.7
경험부족	2	4.7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	7	16.3
나이가 많음	5	11.6
수입(보수)이 적음	1	2.3
작업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1	2.3
가사나 육아문제	2	4.7
무응답	19	44.2
합계	43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가 활동에서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음이 25.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56〉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
종교활동	23	13.5
사회교육(꽃꽂이, 문학 강좌 수강 등)	4	2.4
건강 활동(등산, 스포츠 활동 등)	41	24.1
취업준비(직업교육수강, 자격증취득 등)	10	5.9
자원봉사활동	28	16.5
문화 활동(영화, 미술, 음악 등)	12	7.1
기타	3	1.8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음	44	25.9
무응답	5	2.9
합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가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7〉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10	22.7
자녀양육 문제로 시간 내기 어려움	8	18.2
직장일로 시간 내기 어려움	12	27.3
비용부담	7	15.9
가족의 이해 부족	3	6.8
기타	3	6.8
무응답	1	2.3
합계	44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사회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건강교육(32.9%), 직업기술교육(28.2%) 등의 순이었음.

〈표 3-58〉 사회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
취미문화(꽃꽂이, 무용, 그림, 음악 등)	32	18.8
교양교육(역사, 문학 등)	9	5.3
건강교육(스포츠, 질병예방 등)	56	32.9
육아교육	2	1.2
직업기술(자격이나 기술습득교육)	48	28.2
자원봉사교육(상담, 호스피스 등)	19	11.2
기타	1	0.6
무응답	3	1.8
합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다음 종류의 어려운 일 경험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란전화가 7.1%이었음.

〈표 3-59〉 어려운 일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
성희롱	4	2.4
음란전화	12	7.1
성폭행 등	1	0.6
기타	3	1.8
없다	137	80.6
무응답	13	7.6
합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대처방법을 묻은 결과, 그냥 피한다는 답변이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가족과 상의(40.0%), 가해자에게 항의(10.0%) 순이었음.

〈표 3-60〉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
그냥 피함	9	45.0
가족과 상의	8	40.0
상담기관의 문의	1	5.0
경찰에 신고	-	-
가해자에게 항의	2	10.0
합계	2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성센터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여성센터를 알고 있었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3%뿐이었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55.3%로 나타남.

〈표 3-61〉 여성센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42	24.7	있다	26	15.3	있다	94	55.3
조금안다	61	35.9	없다	133	78.2	없다	43	25.3
모른다	65	38.2	무응답	11	6.5	비해당	22	12.9
무응답	2	1.2	-	-	-	무응답	11	6.5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45.3%이었으며 향후 이용희망율은 이보다 높은 51.2%이었음.

〈표 3-62〉 여성인력개발센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4	8.2	있다	6	3.5	있다	87	51.2
조금안다	63	37.1	없다	152	89.4	없다	48	28.2
모른다	89	52.4	무응답	12	7.1	비해당	25	14.7
무응답	4	2.4	-	-	-	무응답	10	5.9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여성회관에 대한 인지도는 68.3%로 높았으나 향후 이용의향은 이보다 낮은 57.6%로 나타남.

〈표 3-63〉 여성회관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53	31.2	있다	42	24.7	있다	98	57.6
조금안다	63	37.1	없다	123	72.4	없다	44	25.9
모른다	52	30.6	무응답	5	2.9	비해당	17	10.0
무응답	2	1.2	-	-	-	무응답	11	6.5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인지도는 49.4%이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었음.

〈표 3-64〉 가정폭력상담소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23	13.5	있다	-	-	있다	49	28.8
조금안다	61	35.9	없다	161	94.7	없다	73	42.9
모른다	82	48.2	무응답	9	5.3	비해당	37	21.8
무응답	4	2.4	-	-	-	무응답	11	6.5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합 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인지도는 50.0%로 가정폭력상담소보다 다소 높았음.

〈표 3-65〉 성폭력상담소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7	10.0	있다	-	-	있다	54	31.8
조금안다	68	40.0	없다	161	94.7	없다	71	41.8
모른다	81	47.6	무응답	9	5.3	비해당	34	20.0
무응답	4	2.4	-	-	-	무응답	11	6.5
합 계	170	100	합 계	170	100	합 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진도군에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문화시설이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시설 23.5%, 여가 활동시설 17.6%로 나타남.

〈표 3-66〉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구분	빈도	%
직업훈련 및 알선시설	23	13.5
여가활동시설(스포츠시설 등)	30	17.6
보육시설	11	6.5
건강 및 의료시설	40	23.5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43	25.3
사회교육시설	6	3.5
자원봉사 연계시설	9	5.3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시설	4	2.4
무응답	4	2.4
합계	170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5. 아동·청소년분야

가. 취학전 아동보육

- 낮 시간동안 취학 전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똑같았으며, 2순위로는 학원이 50.0%로 가장 높았음.

〈표 3-67〉 낮 시간동안 취학 전 자녀 돌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모, 조부모 등)	-	-	-	-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조부모, 친인척 등)	-	-	1	16.7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2	33.3	-	-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2	33.3	-	-
민간유치원에 보냄	-	-	-	-
국공립 유치원에 보냄	2	33.3	-	-
아이들끼리 집에서 놀도록 함	-	-	1	16.7
학원에 보냄	-	-	3	50.0
무응답	-	-	1	16.7
합계	6	100	6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현재 1 자녀 당 월평균 보육비용 지출금액은 평균 약 15만원이며, 미취학 자녀 1명 당 평균 약 10만원의 보육비용 지출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표 3-68〉 평균 보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보육비용	6명	6	20	15.17	6.765
적정 보육비용(월)	6명	5	20	10.83	4.916

자료: <표 3-1>과 동일

나. 초등학생

- 자녀의 방과 후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학원에서 보냄, 집에서 아이들끼리 지냄 순으로 나타남.
- 첫째자녀 기준으로 가장 염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공부 및 성적이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진로결정(14.3%)이었음.
- 초등학생 자녀 사교육비로 월평균 약 1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9〉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명,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8명	0	30	16.07	8.432

자료: <표 3-1>과 동일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 교육 보조비 지원(급식비 보조 등)이 53.6%로 가장 높았고 자녀 교육 관련 부모상담 및 교육이 그 다음이었음.

〈표 3-70〉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빈도	%
자녀교육보조비 지원(급식비 보조 등)	15	53.6
자녀교육관련 부모상담 및 교육	8	28.6
자녀의 학습지도(아간 공부방 포함)	3	10.7
방과 후 공부방 제공(아간 공부방 포함)	2	7.1
기타	-	-
합계	28	100

자료: <표 3-1>과 동일

- 아동청소년회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묻은 결과, 인지도 39.3%, 이용경험을 3.6%, 이용의향을 39.3%로 나타남.

〈표 3-71〉 아동청소년회관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1	3.6	있다	1	3.6	있다	11	39.3
조금안다	10	35.7	없다	24	85.7	없다	4	14.3
모른다	12	42.9	무응답	3	10.7	비해당	8	28.6
무응답	5	17.9	-	-	-	무응답	5	17.9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지도는 28.6%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율은 3.6%이었음.

〈표 3-72〉 아동학대예방센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	-	있다	1	3.6	있다	7	25.0
조금안다	8	28.6	없다	24	85.7	없다	7	25.0
모른다	15	53.6	무응답	3	10.7	비해당	9	32.1
무응답	5	17.9	-	-	-	무응답	5	17.9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아동상담실에 대한 인지도는 32.1%이며, 이용의향율도 이와 비슷한 35.7%이었음.

〈표 3-73〉 아동상담실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	-	있다	1	3.6	있다	10	35.7
조금안다	9	32.1	없다	24	85.7	없다	6	21.4
모른다	14	50.0	무응답	3	10.7	비해당	7	25.0
무응답	5	17.9	-	-	-	무응답	5	17.9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8%, 이용경험이 있다가 25.0%, 이용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남.

〈표 3-74〉 지역아동센터

(단위: 명, %)

인 지 도			이 용 경 험			이 용 의 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잘안다	6	21.4	있다	7	25.0	있다	11	39.3
조금안다	6	21.4	없다	17	60.7	없다	6	21.4
모른다	11	39.3	무응답	4	14.3	비해당	6	21.4
무응답	5	17.9	-	-	-	무응답	5	17.9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합 계	28	100.0

자료: <표 3-1>과 동일

제2절 진도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²⁾

□ 진도군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결혼이 94.5%로 전국 평균 79.2%보다 현저히 높았음.

○ 이는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3-7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한국 평균	79.2	7.3	4.0	3.5	2.1	3.9	100.0(129,080)
진도군	94.5	1.6	3.2	-	-	0.7	100.0(173)
연령							
24세 이하	100.0	-	-	-	-	-	100.0(62)
25~29세	97.2	2.8	-	-	-	-	100.0(36)
30~34세	87.5	6.3	-	-	-	6.3	100.0(16)
35~39세	100.0	-	-	-	-	-	100.0(31)
40~49세	100.0	-	-	-	-	-	100.0(20)
50세 이상	14.3	-	85.7	-	-	-	100.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0.0	-	-	-	-	-	100.0(30)
중학교	90.7	1.9	7.4	-	-	-	100.0(54)
고등학교	94.4	1.9	1.9	-	-	1.9	100.0(54)
대학 이상	100.0	-	-	-	-	-	100.0(30)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 재분석.

□ 진도군 거주 국제결혼 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24.2%로 전국 평균 31.1%보다 현저히 낮았음.

○ 국적 미취득자 중 향후 국적 취득 예정은 83.6%이었고,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비율은 3.6%이었음

○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1%이었음.

2)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 중 진도군 해당자료인 177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석하였음.

〈표 3-76〉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계획 여부 ¹⁾				
	(분석대상)	취득률	국적 취득 예정	영주권만 취득예정	예정 없음	모름	계(수)
한국 평균	(129,220)	31.1	72.0	13.1	2.1	12.8	100.0(74,813)
진도군	(170)	24.2	83.6	3.6	1.1	11.7	100.0(13)
연령							
24세 이하	(64)	14.1	84.9	1.9	-	13.2	100.0(53)
25~29세	(36)	19.4	76.9	3.8	3.8	15.4	100.0(26)
30~34세	(15)	33.3	80.0	-	-	20.0	100.0(5)
35~39세	(29)	37.9	100.0	-	-	-	100.0(13)
40~49세	(20)	45.0	80.0	10.0	-	10.0	100.0(10)
50세 이상	(7)	-	100.0	-	-	-	100.0(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0)	3.3	80.8	-	-	19.2	100.0(26)
중학교	(53)	15.1	80.0	2.5	-	17.5	100.0(40)
고등학교	(55)	38.2	96.2	3.8	-	-	100.0(26)
대학 이상	(30)	36.7	82.4	5.9	5.9	5.9	100.0(17)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3-75>과 동일

□ 진도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음

-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21.7%로 전국 평균 37.3%보다 낮았으며, (매우)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33.2%로 전국 평균 24.1%보다 높았음.

□ 진도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 또한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음

-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24.7%로 전국 평균 38.0%보다 낮았으며, (매우)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24.9%로 전국 평균 24.2%보다 미미하나마 높았음.

□ 진도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또한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음

-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20.8%로 전국 평균 33.0%보다 낮았으며, (매우) 서툰 편이라는 비율은 27.5%로 전국 평균 31.6%보다 높았음.

〈표 3-77〉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말하기 능력					계(수)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한국 평균	17.4	19.9	38.7	17.8	6.3	100.0(128,824)
진도군	6.7	15.0	45.0	25.6	7.6	100.0(173)
연령						
24세 이하	-	8.1	48.4	35.5	8.1	100.0(62)
25~29세	-	10.8	35.1	35.1	18.9	100.0(37)
30~34세	26.7	13.3	33.3	20.0	6.7	100.0(15)
35~39세	12.9	12.9	51.6	22.6	-	100.0(31)
40~49세	14.3	33.3	52.4	-	-	100.0(21)
50세 이상	-	57.1	42.9	-	-	100.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6.1	24.2	48.5	21.2	100.0(33)
중학교	7.3	12.7	38.2	36.4	5.5	100.0(55)
고등학교	7.4	22.2	50.0	13.0	7.4	100.0(54)
대학 이상	9.4	15.6	65.6	9.4	-	100.0(32)

자료: <표 3-75>과 동일

〈표 3-78〉 특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읽기 능력					계(수)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한국 평균	17.5	20.5	37.8	17.0	7.2	100.0(119,646)
진도군	8.9	15.8	50.4	17.8	7.1	100.0(147)
연령						
24세 이하	1.9	13.2	54.7	22.6	7.5	100.0(53)
25~29세	-	10.7	42.9	28.6	17.9	100.0(28)
30~34세	28.6	14.3	28.6	21.4	7.1	100.0(14)
35~39세	14.8	14.8	59.3	11.1	-	100.0(27)
40~49세	15.8	21.1	63.2	-	-	100.0(19)
50세 이상	-	66.7	16.7	16.7	-	100.0(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9.5	19.0	57.1	14.3	100.0(21)
중학교	8.5	14.9	57.4	17.0	2.1	100.0(47)
고등학교	12.0	20.0	50.0	8.0	10.0	100.0(50)
대학 이상	10.3	13.8	62.1	10.3	3.4	100.0(29)

자료: <표 3-75>과 동일

〈표 3-79〉 특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쓰기 능력					계(수)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한국 평균	16.1.	16.9	35.4	21.5	10.1	100.0(119,501)
진도군	8.9	11.9	51.6	19.5	8.0	100.0(147)
연령						
24세 이하	1.9	5.7	54.7	30.2	7.5	100.0(53)
25~29세	-	3.7	55.6	22.2	18.5	100.0(27)
30~34세	30.8	-	38.5	23.1	7.7	100.0(13)
35~39세	14.8	25.9	44.4	11.1	3.7	100.0(27)
40~49세	15.8	15.8	68.4	-	-	100.0(19)
50세 이상	-	66.7	16.7	16.7	-	100.0(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5.3	26.3	47.4	21.1	100.0(19)
중학교	8.5	17.0	48.9	17.0	8.5	100.0(47)
고등학교	12.0	12.0	58.0	10.0	8.0	100.0(50)
대학 이상	10.3	10.3	62.1	17.2	-	100.0(29)

자료: <표 3-75>과 동일

□ 진도군 결혼이민자의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현존 자녀수는 평균 1.3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 많았음.

○ 현 배우자와의 자녀는 30~34세 연령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1.7명으로 많았음

〈표 3-8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전체	39.3	38.4	18.2	4.1	100.0(120,844)	0.9
진도군	21.6	36.7	35.2	6.4	100.0(166)	1.3
연령						
24세 이하	10.9	56.3	32.8	-	100.0(64)	1.2
25~29세	20.6	38.2	38.2	2.9	100.0(34)	1.3
30~34세	7.1	42.9	28.6	21.4	100.0(14)	1.6
35~39세	38.7	12.9	45.2	3.2	100.0(31)	1.2
40~49세	30.0	15.0	35.0	20.0	100.0(20)	1.5
50세 이상	80.0	-	-	20.0	100.0(5)	1.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7.6	41.4	31.0	-	100.0(29)	1.1
중학교	18.0	48.0	32.0	2.0	100.0(50)	1.2
고등학교	24.1	35.2	35.2	5.6	100.0(54)	1.2
대학 이상	16.1	16.1	45.2	22.6	100.0(31)	1.7

자료: <표 3-75>과 동일

□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49.9%로 전국 평균 57.0%보다 낮았음.

○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시설 또는 기관을 질문할 결과, 진도군은 유치원이 53.0%로 어린이집 47.0%보다 높았음.

〈표 3-81〉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¹⁾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계(수)
전체	(50,165)	57.0	40.0	57.5	1.2	1.4	100.0(28,277)
진도군	(96)	49.9	53.0	47.0	-	-	100.0(48)
연령							
24세 이하	(47)	38.3	27.8	72.2	-	-	100.0(18)
25~29세	(22)	31.8	42.9	57.1	-	-	100.0(7)
30~34세	(8)	62.5	80.0	20.0	-	-	100.0(5)
35~39세	(10)	90.0	88.9	11.1	-	-	100.0(9)
40세 이상	(8)	100.0	62.5	37.5	-	-	100.0(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0)	45.0	44.4	55.6	-	-	100.0(9)
중학교	(33)	48.5	35.3	64.7	-	-	100.0(17)
고등학교	(26)	46.2	41.7	58.3	-	-	100.0(12)
대학 이상	(16)	68.8	100.0	-	-	-	100.0(11)

주: 1) 시설에 보내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3-75>과 동일

□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아보육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진도 48.1%, 전국 44.4%), 다음은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진도 16.3%, 전국 3.1%),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진도 12.0%, 전국 13.3%) 등이었음.

○ 특히,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이용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보육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가족도 일부 있었음.

○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봐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이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 다시 말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진도군이 6.4%로 전국 평균 4.1%보

다 높았음.

〈표 3-82〉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¹⁾

(단위: %, 명)

구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 2세 미만이라 받아 주지 않아서	보육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 거부나 차별, 놀림을 받을 까봐	기타	계(수)
전체	13.3	3.1	44.4	2.2	13.7	0.7	22.7	100.0(19,863)
진도군	12.0	16.3	48.1	3.0	6.0	3.0	11.7	100.0(44)
연령								
24세 이하	14.8	-	63.0	3.7	3.7	3.7	11.1	100.0(27)
25~29세	8.3	33.3	25.0	-	8.3	-	25.0	100.0(12)
30~34세	-	100.0	-	-	-	-	-	100.0(3)
35~39세	-	-	100.0	-	-	-	-	100.0(1)
40세 이상	-	-	-	-	-	-	-	-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30.0	30.0	-	10.0	-	30.0	100.0(10)
중학교	7.1	-	78.6	7.1	-	7.1	-	100.0(14)
고등학교	21.4	21.4	50.0	-	-	-	7.1	100.0(14)
대학 이상	-	25.0	25.0	-	25.0	-	25.0	100.0(4)

주: 1)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3-75>과 동일

〈표 3-83〉 결혼이민자 특성별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돌보는 사람¹⁾

(단위: %, 명)

구분	봐주는 사람 없음 (아이 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수)
한국 평균	4.1	82.3	10.8	0.6	0.4	1.7	100.0(18,582)
진도군	6.4	84.1	6.4	-	-	3.2	100.0(41)
연령							
24세 이하	11.5	73.1	11.5	-	-	3.8	100.0(26)
25~29세	-	100.0	-	-	-	-	100.0(12)
30~34세	-	100.0	-	-	-	-	100.0(3)
35~39세	-	100.0	-	-	-	-	100.0(1)
40세 이상	-	-	-	-	-	-	-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100.0	-	-	-	-	100.0(9)
중학교	8.3	66.7	25.0	-	-	-	100.0(12)
고등학교	7.7	84.6	-	-	-	7.7	100.0(13)
대학 이상	-	100.0	-	-	-	-	100.0(5)

주: 1)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3-75>과 동일

□ 초등학생을 방과후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5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26.9%이었음.

-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냄’은 진도군이 16.6%로 전국 평균 14.2%보다 높았음.
- 방과후 보육시설,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과의 보육·교육격차를 엿볼 수 있음.

〈표 3-84〉 결혼이민자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¹⁾

(단위: %, 명)

구분	아이 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보육시설	사설 학원	기타 ²⁾	계(수)
한국 평균	14.2	40.2	8.9	13.3	6.9	13.3	3.3	100.0(13,678)
진도군	16.6	51.4	-	26.9	-	-	5.1	100.0(25)
연령								
24세 이하	-	-	-	-	-	-	-	-
25~29세	-	100.0	-	-	-	-	-	100.0(1)
30~34세	20.0	20.0	-	60.0	-	-	-	100.0(5)
35~39세	27.3	45.5	-	27.3	-	-	-	100.0(11)
40세 이상	-	71.4	-	14.3	-	-	14.3	100.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	-	-	-	-	-
중학교	33.3	33.3	-	33.3	-	-	-	100.0(3)
고등학교	-	60.0	-	20.0	-	-	20.0	100.0(5)
대학 이상	18.8	56.3	-	25.0	-	-	-	100.0(16)

주: 1) 초등학생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파출부·도우미, 이웃·친구 등이 포함됨.

자료: <표 3-75>과 동일

-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는 88.5%로 전국 평균 83.4%보다 5%pt 높았음.
- 진도군의 다문화가족은 ‘숙제 지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41.5%), 다음은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음(25.6%).
 - ‘학원비 마련’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불과하여 보낼 학원이 충분치 않거나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됨.
 - 전국적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가장 어려웠고, 다음은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 23.2%, ‘숙제 지도하기’는 19.8%이었음.

〈표 3-8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¹⁾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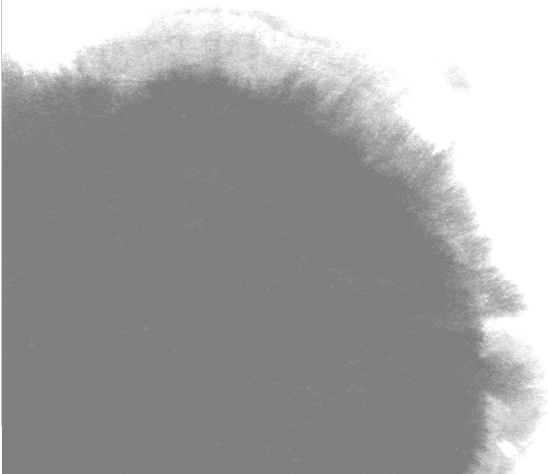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행기기	숙제 지도 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수)
한국 평균	16.5	2.9	19.8	23.2	27.4	5.0	5.3	100.0(13,605)
진도군	11.5	-	41.5	25.6	5.8	10.9	5.1	100.0(25)
연령								
24세 이하	-	-	-	-	-	-	-	-
25~29세	-	-	100.0	-	-	-	-	100.0(1)
30~34세	20.0	-	60.0	20.0	-	-	-	100.0(5)
35~39세	9.1	-	27.3	27.3	9.1	27.3	-	100.0(11)
40세 이상	-	-	50.0	37.5	-	-	12.5	100.0(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	-	-	-	-	-
중학교	33.3	-	33.3	-	-	-	-	100.0(3)
고등학교	-	-	20.0	60.0	-	-	20.0	100.0(5)
대학 이상	6.7	-	53.3	26.7	6.7	6.7	-	100.0(15)

주: 1)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3-75>과 동일

04

진도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언



제4장 진도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제안

제1 절 기본방향

- 진도군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평가결과는 232개 지자체 중 평균 2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최고 153위, 최저 228위).
 -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부서 직원의 노력이 배가(倍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시 말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도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철저한 진단과 정확한 방향설정이 요구됨.
 - 진도군의 미래 인구 및 가구의 제 특성의 변화, 지역개발 등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특화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임.
 - －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만이 지역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진도군의 공공복지조직이 인구특성, 복지욕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구조화의 여지가 없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복지기획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업무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여성아동담당의 업무로 여성정책,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정책, 보육 등이 있으나 인력은 3인에 불과하여 인력배치 또는 업무분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복지재정의 확충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떤 분야의 어떤 유형의 시설이 부족 또는 많은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 하에 복지시설 확충, 또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복지분야별 균형적으로 시설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군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파악하고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중장기 측면에서 적정수준에 도달되어 있는지, 기능 및 역할의 중복성은 없는지를 검토함.
 - － 현재와 미래를 감안하여, 부족한 시설유형과 과도한 시설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며, 필요하다면 시설의 기능전환, 통폐합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함.
 - － 복지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수한 민간복지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 또한 민간복지인력의 겸직금지 등 규정 준수를 통하여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우수인력의 근무지속성과 사기양양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지역주민 또는 분야별 민간관계자의 로비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해당되

지 않는 시설유형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민간 복지관계자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설득이 필요함.

□ 지자체 스스로 지역복지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함.

○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매칭펀드로서의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양적 및 질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복지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 민간복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설정된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재원에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며, 특히 공공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도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강구되어 함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민간복지재원은 지역사회와 진도군 출신 유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자원개발이 필요함.

— 민간재원의 투명성 및 활용처가 공개되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복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질적 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민간복지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제고하는 방안과 실비(實費)보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성과란 조직이나 단체 혹은 개인들의 계획과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또한 성과관리는 조직이나 팀, 개인들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케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장치 및 노력을 의미한다(김승권 외, 2008).
-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 업무량 측정(workload measures)은 수행된 업무의 양이나 제공된 서비스의 양을 나타냄.
 - － 능률성 측정(efficiency measures)은 수행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자원의 관계를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능률성은 단위비용의 형태로 측정됨.
 - － 효과성 측정(effectiveness measures)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나 수행된 업무의 질을 나타냄.
 - － 생산성 측정(productivity measures)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측정하는 것임.

$$\text{능률성} = \frac{\text{산출(output)}}{\text{투입(input)}} = \frac{\text{효과}}{\text{비용}} = \text{효율성}$$

- 각 영역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평가지표를 최소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총괄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복지총괄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 인구 1인당 복지사업비(일반회계) •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복지계획 수립여부 • 지역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성 • 지역복지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여부 •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 전체시설대비 미신고시설의 비율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실적	• 생활시설의 충분성(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리수준 • 이용시설의 충분성(사회복지이용시설의 이용률,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수준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 인구 천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활동시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 실적 •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 및 예산규모 • 지역복지 민관협력 사업 건수

—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 노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여부 • 노인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노인수 •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 노인 이용시설 설치율 • 노인이용시설 이용노인수(노인 1인당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횟수)	• 노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 노인복지관련 지자체 (특수)사업의 수 •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 기초노령연금 변동자료 적기처리

—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 청소년 1인당 청소년정책사업비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1인당 청소년수 • 아동 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 읍·면·동 아동위원 배치율 • 아동1인당 아동복지 특수시책 사업수 및 사업비 • 아동복지이양사업비 및 실적증감률 • 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 관련 전달체계 구축수준 •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 방과후 아동보호비용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 지원계좌) 저축률 •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율 •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 • 아동 문화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교육실시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 아동참여율(아동 조사 및 시책반영, 아동 총회, 아동 권리위원회, 아동위원회 등 개최, 기타 아동의견수렴 반영)

－ 보육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보육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영유아1인당 보육예산 • 보육수요 충족률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 보육시설 이용률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 취약보육실시율 • 보육시설 인권침해 발생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 장애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장애인복지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등록장애인수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 •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 •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 수 • 장애인복지 사업관련 특수사업 지원 예산 •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 충족 품목 비율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제공기관 참여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 사회서비스 예산대비 집행률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 기초보장 및 자활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기초보장 및 자활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저소득층 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보장담당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활용실적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 민간 및 타기관 연계 발굴 실적 • 탈수급실적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자 가구수 • 급여조정의 정확성 및 실적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 긴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 실적 • 자활사업 조건 이행률(불이행률) •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참여자의 취업·창업률 •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 자활기금 활용실적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정도 •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

— 의료급여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의료급여 영역의 주요 관리지표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신속처리율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 의료급여제도 홍보실적 • 의료급여제도 교육실적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	•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진료비 증감률

□ 지역사회단위의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체계화·연계화를 강화함.

○ 적절한 수준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효과 극대화, 복지의 효율성 증대 등 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제한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정책 및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김승권 외, 2006, 2007).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지역사회에 널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함.
- 복지기관 중 기능의 중복성을 가진 기관을 조정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제공주체를 마련함.
-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복지위원, 아동위원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함.
- 급속히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를 최대한 활용한 복지사업(홈페이지, 인터넷, 업무의 전산화 구축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사통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IT산업을 활용한 지역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진도군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자활영역, 복지총괄,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의 영역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일치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1. 복지총괄

- 복지총괄 종합의견
 - 진도군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지역사회협의회체 활성화,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유일하게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 중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만 전국 평균을 상회함.
- 복지총괄 영역의 개선방안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수가 적다는 것은 민간복지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수가 적어 민간복지 종사자가 적게 채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복지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력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 하는 것도 중요함.
 - 또한 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를 많이 고용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수립된 지역복지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 연차별 시행계획을 6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 － 협의체 위원의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수준을 꾀할 수 있는 사업 증설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지역특화사업의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관련 주민과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 민관협력건수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와 이들의 봉사활동 총시간이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2. 노인복지

□ 노인복지 종합의견

- 많은 노인인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영역 중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지표의 평가결과는 매우 저조함.

□ 노인복지 영역의 개선방안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제고를 위해 현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시장의 활성화, 공공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향후 노인복지영역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부부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어야 함.
 -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활발한 노후생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대간 갈등해소 및 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함.

3. 아동·청소년정책

□ 아동·청소년 영역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복지는 대체로 잘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영역의 개선방안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연계 등이 필요함.
 -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후원관리기관에 아동발달계좌 미개설 아동에 대한 후원금을 협조하도록 안내 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함.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고 유해업소 단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단속이 다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학업, 여가활동, 보호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 아동 및 청소년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를 확대해 나가야 함.
 - －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는 필수적이라 판단됨.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와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동, 공동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4. 보육

□ 보육 종합의견

-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국 평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평가인증률을 높이고 취약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보육 영역의 개선방안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을 대폭 개선하여야 함.
 - － 특히, 평가인증제도가 제2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 있음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
 - 평가인증을 신청 또는 탈락하는 이유를 명백히 규명하여 행정적 및 재정

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평가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 보육시설에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
 -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영아보육, 장애보육, 시간외 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거점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취약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

5.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는 매우 빈약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사업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생산품 우선 구매사업은 지자체의 관심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 영역의 개선방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핵심 평가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당면 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장애인에 대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되,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장애인이 실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이 전국 평균 및 해당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우선 구매대상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생산품도 경쟁력이 있어야 구매 가능하므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함.

6.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

- 사회서비스는 한국복지의 발전을 위해 최근에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사업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는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가 매우 저조하므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개선방안

-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보다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제공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이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됨.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숙련, 중고령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영역임을 주지해야 할 것임.

7.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종합의견

- 기초생활보장 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세부 평가지표가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공공부조정책이 요구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개선방안

- 기초보장 영역의 신규수급자 발굴, 급여조정, 긴급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긴급지원 결정 후 연계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8. 자활

□ 자활 종합의견

- 자활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와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에 대한 실적은 기본점수만을 획득하였음.

□ 자활영역 개선방안

- 지정학적 특성상 자활영역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활기관을 통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 자활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의미있는 것은 기금의 활용과 이를 통한 취업 및 창업과 탈수급이므로 공격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 자활사업 참여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 시장진입형 사업, 취업·창업률, 탈수급률이 낮은 것은 수급자들 역시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 －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혹은 관련 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수급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탈수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프로그램과 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 간부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초로 공무원, 지역 복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워크숍 혹은 만남을 통해 자활사업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탈수급·탈빈곤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에서 자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의료급여

□ 의료급여 종합의견

- 의료급여 영역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경향인 바, 전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노인인구가 많은 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중력이 보다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의료급여 영역 개선방안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
 -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수급권자 평균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감률은 의료급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에 대한 관리, 선택병의원대상자 관리, 본인부담제도 관리 및 철저한 자격 관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일수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것임.
 -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본 지표이외에 수급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이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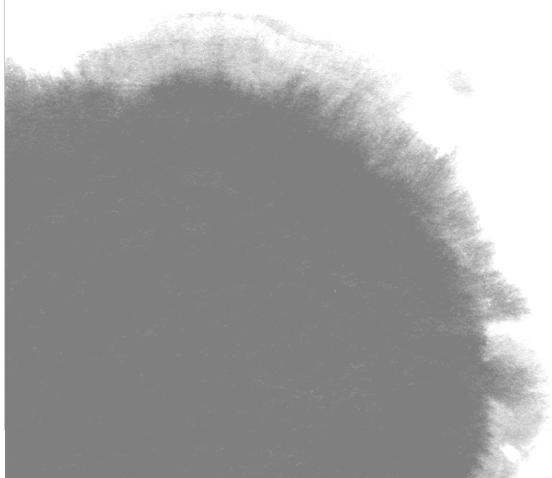
- 김승권 외,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승권 외,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승권 외, 『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승권 외,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승권 외, 『능동적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승권 외,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승권 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승권 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0.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0.
- 진도균, 내부자료, 2011.

진도군, 통계연보, 2010.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부 록



부록

[부록 1]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³⁾

1. 종합평가 결과

□ 2010 복지정책 평가결과는 7,715점 만점에 평균 5,178.45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67.12점이었음.

— 최고점수 6,063.71점, 최저점수 4,185.70점으로 약 1.45배의 격차를 보였음(표 1 참조).

—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점수는 78.60점, 최저점수는 54.25점이었음.

<표 1> 2010년 복지정책 평가 총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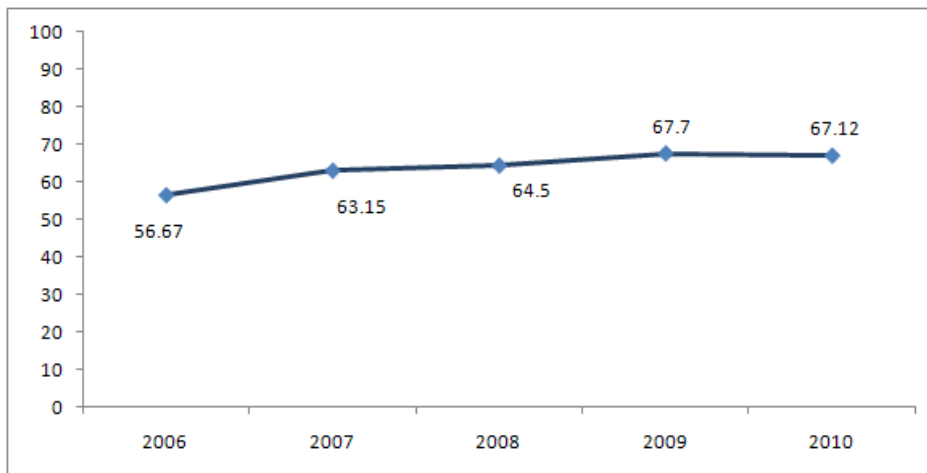
영역	만점 기준				100점 기준		
	만점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총점	7,715	6,063.71	4,185.70	5,178.45	78.60	54.25	67.12

3) 2010. 11. 4~5일 제주시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개최된 ‘2010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의 발표자료임. 우수지자체만 참석하였으므로 평가결과의 전국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평균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 67.12점으로 '06년의 56.67점, '07년의 63.15점, '08년의 64.5점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09년의 67.7점보다는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음(그림 1 참조).
- 기초 지자체에 대한 복지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자체 복지관계자의 복지증진 노력 증대, 복지재정 확충, 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증가하던 복지수준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100점 기준 평균 70점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효과성 증대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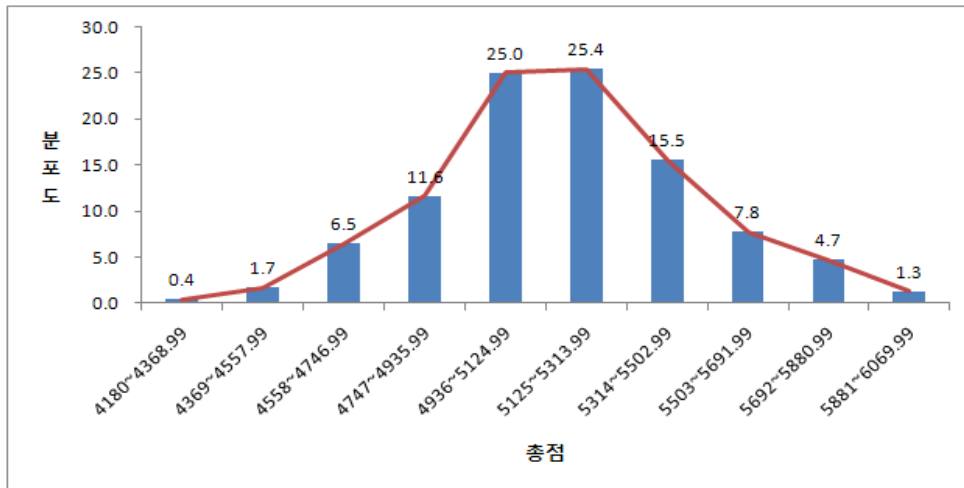
[그림 1] 2006~2010년 복지정책 평가 총점 비교

(단위: 점)



- 232개 지자체의 평가점수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이 정상분포에 매우 가까움.
- 이는 2010년 복지정책 평가들 및 평가지표가 “적절함”을 시사함.

[그림 2] 2010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총점 분포도



2. 종합평가 결과의 지역간 격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은 100점 기준 65~68점대로 3대 지역간 격차는 미미하였음.

— 중소도시(68.40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67.06점)이었으며, 농어촌(65.96점)이 가장 낮았음.

<표 2> 2010년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

(단위: 점)

지역	만점 기준				100점 기준		
	만점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대도시	7,715	5,880.44	4,185.40	5,173.97	76.22	54.25	67.06
중소도시	7,715	5,989.79	4,628.05	5,277.20	77.64	59.99	68.40
농어촌	7,715	6,063.71	4,392.83	5,088.69	78.60	56.94	65.96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수준 격차는 2006~2008년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으나, 2009년보다는 다소 격차를 보였음.

- 1,0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도시 74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62.21점, 최저점수는 542.50점, 중소도시 77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76.38점, 최저점수는 599.88점, 그리고 농어촌 81개 지자체의 최고점수는 785.96점, 최저점수는 569.39점임.

〈표 3〉 2006~2010년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최고 및 최저(1000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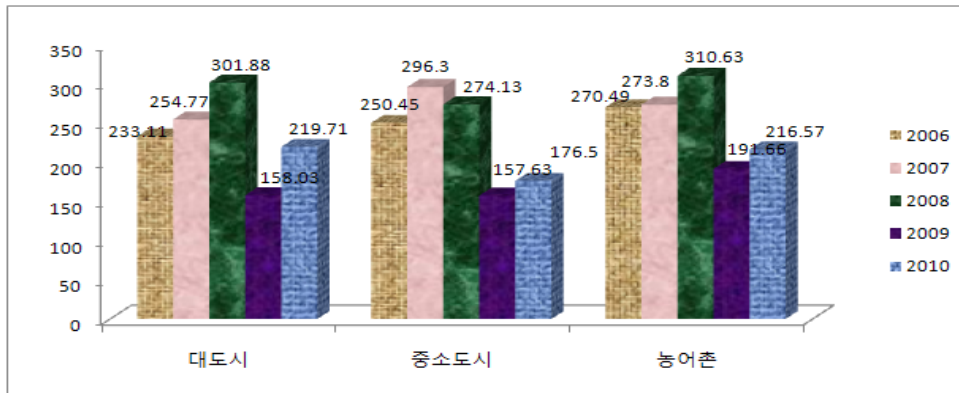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년	최고	708.42	721.33	682.28
	최저	475.31	470.88	411.79
	차이	233.11	250.45	270.49
2007년	최고	757.74	800.50	738.39
	최저	502.97	504.20	465.31
	차이	254.77	296.30	273.80
2008년	최고	839.30	809.87	775.13
	최저	537.42	535.74	464.50
	차이	301.88	274.13	310.63
2009년	최고	737.29	759.93	786.79
	최저	579.26	602.30	595.13
	차이	158.03	157.63	191.66
2010년	최고	762.21	776.38	785.96
	최저	542.50	599.88	569.39
	차이	219.71	176.5	216.57

주: 평가총점은 2006년 720점, 2007년과 2008년 1,000점, 2009년 2,977점, 2010년 7,715점이어서 5개년도 비교를 위하여 평가총점을 1,000점으로 환산함.

- 다시 말해, 2010년도 복지수준 격차는 대도시가 가장 컸으며(1,000점 기준 219.71점), 그 다음으로 농어촌(1,000점 기준 216.57점), 그리고 가장 격차가 적은 지역은 중소도시(1,000점 기준 176.5점)로 나타남.

[그림 3] 2006~2010년 지역별 최고점-최저점 차(1,000점 기준 환산)



3. 복지정책 평가총점의 16개 그룹간 격차

□ 16개 평가그룹의 평균 평가총점은 대도시 D그룹이 5,381.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N그룹은 4,981.33점으로 가장 낮았음.

— 16개 그룹 중 평균 평가총점이 5,000점 미만인 경우는 2개 이었으며, 모두 농어촌에 해당되었음(N그룹과 O그룹).

□ 동일한 그룹이더라도 평가결과는 여전히 지자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유사한 여건 하에서도 노력과 관심에 따라 복지수준이 상이함을 시사함.

— 16그룹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00점 이상인 그룹이 7개 나 되었음.

〈표 4〉 2010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정책 평가 총점

(단위: 점)

평가그룹	최고	최저	평균
대도시	A그룹 5,422.69	4,520.69	5,063.54
	B그룹 5,454.87	4,559.98	5,041.54
	C그룹 5,462.02	4,185.40	5,093.17
	D그룹 5,880.44	5,027.90	5,381.48
	E그룹 5,808.09	4,895.42	5,282.75
중소도시	F그룹 5,538.42	4,874.50	5,153.69
	G그룹 5,595.36	4,963.38	5,299.30
	H그룹 5,989.79	4,628.05	5,313.66
	I그룹 5,771.67	4,722.74	5,311.85
	J그룹 5,942.86	4,833.80	5,303.42
농어촌	K그룹 5,706.66	4,796.80	5,315.15
	L그룹 5,414.12	4,693.15	5,032.45
	M그룹 6,063.71	4,699.75	5,163.23
	N그룹 5,665.90	4,392.83	4,981.33
	O그룹 5,359.27	4,468.44	4,986.66
	P그룹 5,586.10	4,539.52	5,070.78

4.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

- 2010년 복지정책 평균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영역별로 살펴 보면, 노인복지가 83.5%로 가장 양호하였고, 다음은 의료급여 71.6%이 었음.
 -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은 55.9%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의 영역은 62.3~67.5%의 범주에 있었음.
- 2010년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가 장 큰 영역은 장애인복지(508.65점, 영역 총점의 57.5%)와 보육 (318.08점, 영역 총점의 56.0%)이었음.
 - 가장 격차가 작은 영역인 노인복지도 314.70점(영역 총점의 34.1%)이나 차이가 있었음.

〈표 5〉 2010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의 평균 및 최고·최저 점수

(단위: 점)

영역	만점	평균(%)	최고	최저	최고·최저
복지총괄	1,711	1,136.75(66.4%)	1,541.11	778.99	762.12
노인복지	922	769.88(83.5%)	922.00	607.30	314.70
아동·청소년복지	568	372.28(65.5%)	516.88	227.20	289.68
보육	568	383.40(67.5%)	545.28	227.20	318.08
장애인복지	937	605.68(64.6%)	883.45	374.80	508.65
지역사회서비스	826	550.77(66.7%)	722.80	382.00	340.80
기초생활보장	885	494.68(55.9%)	734.55	371.70	362.85
자활	688	428.28(62.3%)	646.72	275.20	371.52
의료급여	610	436.73(71.6%)	573.40	280.60	292.80

□ 2006~2010년 기간중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영역은 노인복지(50.0%), 아동청소년복지(27.9%), 장애인복지(26.0%) 등이었음.

— 이와는 달리 과거연도보다 평가점수가 감소한 영역은 의료급여(-6.2%)와 기초생활보장(-0.1%)이었음.

〈표 6〉 2006~2010년 영역별 복지정책 평가 평균 점수(100점 기준 환산)

(단위: 점, %)

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06~'10)
총점	56.67	63.15	64.50	67.73	67.12	18.4
복지총괄	55.86	58.39	69.03	71.92	66.44	18.9
복지행정혁신	60.70	-	-	-	-	-
노인복지	55.67	61.49	60.17	69.98	83.50	50.0
아동·청소년복지	51.23	66.35	66.58	59.04	65.54	27.9
보육	-	-	-	65.75	67.50	2.7
장애인복지	51.32	55.95	51.31	65.16	64.64	26.0
지역사회서비스	-	-	58.88	65.01	66.68	13.2
기초생활보장	55.98	65.22	61.55	73.39	55.90	-0.1
자활		53.44	64.11	71.31	62.25	11.2
의료급여	76.30	67.44	71.33	70.50	71.59	-6.2
지역복지계획	78.86	-	-	-	-	-

주: 1) 2006년 평가에는 복지행정혁신에 지역사회서비스가 포함되었고, 청소년복지와 보육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역복지계획이 별도 영역으로 있었음; 2) 2007~2008년 평가에는 보육이 아동·청소년복지에 포함되었으며, 2006년의 지역복지계획은 2007년 이후에 복지총괄에 포함되었음; 3) 연도별로 각 영역의 평가점수 및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등 7개 영역의 평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를 보였음(** $P < .001$).

— 반면, 복지총괄과 의료급여 영역의 지역별 평가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대도시의 평균 평가 점수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보다 높은 영역은 보육,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등이었음(의료급여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중소도시의 평균 평가 점수가 대도시 및 농어촌보다 높은 영역은 아동청소년복지, 자활 등이었음.

— 농어촌의 평균 평가 점수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높은 영역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이었음(복지총괄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7〉 2010년 영역 및 지역별 복지정책 평가 점수

(단위: 점)

영역	구분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F
복지총괄	대도시	1431.98	905.35	1123.38	124.254	.757
	중·소도시	1541.11	826.94	1134.79	138.761	
	농·어촌	1479.47	778.99	1150.83	153.603	
노인복지	대도시	922.00	607.30	732.47	71.380	18.955***
	중·소도시	922.00	610.60	785.09	52.951	
	농·어촌	922.00	638.80	789.59	65.029	
아동·청소년복지	대도시	494.16	227.20	329.06	78.981	27.787***
	중·소도시	516.88	255.60	413.90	48.402	
	농·어촌	516.88	227.20	372.22	77.938	
보육	대도시	528.24	278.32	406.66	50.881	9.107***
	중·소도시	545.28	255.60	383.95	75.972	
	농·어촌	499.84	227.20	361.63	66.960	
장애인복지	대도시	858.46	374.80	589.76	123.766	1.469***
	중·소도시	883.45	374.80	602.69	128.443	
	농·어촌	883.45	374.80	623.06	114.616	
지역사회서비스	대도시	722.80	433.60	591.31	86.071	54.150***
	중·소도시	722.80	433.60	583.29	74.504	
	농·어촌	616.76	382.00	482.82	56.728	
기초생활보장	대도시	734.55	389.40	523.35	70.395	9.502***
	중·소도시	708.00	371.70	488.24	73.154	
	농·어촌	672.60	371.70	474.62	70.307	
자활	대도시	626.08	275.20	433.35	68.758	7.959***
	중·소도시	646.72	275.20	451.67	83.474	
	농·어촌	605.44	275.20	401.42	86.557	
의료급여	대도시	573.40	347.70	444.64	53.328	1.303
	중·소도시	549.00	323.30	433.58	47.279	
	농·어촌	524.60	280.60	432.50	52.965	

주: ***P<.001

□ 평가영역별 16개 평가그룹간의 평균 평가 점수는 큰 차이를 보여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복지총괄영역은 K그룹이 1231.94점으로 가장 높았고, F그룹이 1045.81점으로 가장 낮았음.
- 노인복지영역은 K그룹이 837.88점으로 가장 높았고, B그룹이 694.8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아동·청소년복지영역은 G그룹이 422.59점으로 가장 높았고, E그룹

이 308.9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보육영역은 D그룹이 429.79점으로 가장 높았고, F그룹이 335.5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장애인복지영역은 I그룹이 65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B그룹이 536.11점으로 가장 낮았음.
- 사회서비스영역은 F그룹이 66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O그룹이 448.85점으로 가장 낮았음.
- 기초생활보장영역은 D그룹이 551.65점으로 가장 높았고, J그룹이 447.4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자활영역은 F그룹이 478.39점으로 가장 높았고, N그룹이 355.79점으로 가장 낮았음.
- 의료급여영역은 D그룹이 460.35점으로 가장 높았고, L그룹이 412.45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8〉 2010년 평가그룹별 영역의 복지정책 평균 평가 점수

(단위: 점)

지역	평가그룹	복지 총괄	노인 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보육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기초 생활보장	자활	의료 급여
전국		1136.75	769.88	372.28	383.40	605.68	550.77	494.68	428.28	436.73
대도시	A그룹	1055.32	698.74	328.63	406.93	588.78	594.73	522.15	429.51	438.76
	B그룹	1105.96	694.82	348.37	388.13	536.11	565.35	526.87	444.45	431.47
	C그룹	1092.43	737.52	321.11	401.77	589.21	550.24	521.56	445.82	433.51
	D그룹	1155.66	773.80	338.15	429.79	610.13	641.82	551.65	420.14	460.35
	E그룹	1202.99	755.22	308.99	406.69	624.52	604.64	494.42	426.56	458.72
중소 도시	F그룹	1045.81	772.44	409.34	335.50	493.31	660.78	515.66	478.39	442.45
	G그룹	1099.99	776.64	422.59	379.80	569.46	603.59	533.95	461.88	451.40
	H그룹	1134.22	798.14	405.17	399.87	640.43	565.03	492.65	460.50	417.65
	I그룹	1168.75	783.34	417.84	407.19	656.57	561.33	456.33	423.98	436.53
	J그룹	1217.40	794.37	414.29	395.12	647.12	530.69	447.48	436.45	420.52
농어촌	K그룹	1231.94	837.88	384.49	377.06	620.55	531.22	453.39	423.91	454.68
	L그룹	1072.08	794.57	397.16	352.60	598.17	505.64	490.15	409.62	412.45
	M그룹	1215.46	780.40	360.02	381.87	641.87	489.59	476.54	397.98	419.49
	N그룹	1126.59	770.76	376.50	365.14	611.90	470.78	463.36	355.79	440.51
	O그룹	1091.97	781.19	345.26	346.48	655.78	448.85	480.43	393.14	443.56
	P그룹	1171.74	775.90	371.63	348.51	609.47	456.42	483.59	430.00	423.51

5. 평가총점과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

□ 단순상관관계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임.

— 상관계수 r 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상관성이 높아지게 됨.

※ 상관계수가 0.5 이상이 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좋을수록 복지사업이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다고 추측하여 ‘인구수’와 ‘재정력’은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여 왔음.

—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가총점과 인구 및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와 평가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는 양(+)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642)를 보였음.

〈표 9〉 2010년 인구수, 재정자립도,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구분	총점	인구수	재정자립도
총점	1	-	-
인구수	0.59	1	-
재정자립도	-.038	.642**	1

주: **P<.01

□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의 상관관계 방향이 상이하여 전체 상관관계수 값을 상쇄시켰기 때문임.

— 대도시, 중소도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농어촌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평가총점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평가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2010년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구분	재정자립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가결과 총점	-.038	-.345**	-.313**	.271*

주: *P<.05, **P<.01

□ 2010년도 인구수와 평가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3대 지역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표 11〉 2010년 인구수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구수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가결과 총점	.059	-.214	-.055	.168

그룹명	지자체
1그룹	충북 청원군, 충남 당진군, 경기 여주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충남 연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충북 진천군, 전남 화순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2그룹	충남 태안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금산군, 경남 창녕군, 경북 울진군, 경기 연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충북 영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3그룹	전남 해남군, 경남 거창군, 전북 부안군, 강원 평창군, 전남 무안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강원 정선군, 경남 합천군, 경북 성주군, 충북 증평군, 충남 서천군, 경북 고령군
4그룹	충북 단양군, 전남 고흥군, 강원 철원군, 경북 예천군, 전북 고창군, 경북 의성군, 강원 영월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군위군, 강원 횡성군, 경남 의령군, 경남 산청군
5그룹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경남 남해군, 강원 양양군, 경북 영덕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함양군,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 충남 청양군, 경북 청송군, 전남 곡성군,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
6그룹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경북 봉화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